

1장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환경

1. 남북경제교류협력 현황

가.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노력

- 정부는 '88년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였음.
-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간 교역 허용('88.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허용·지원('89. 6)
-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접촉도 일부 성사
- '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함.
- '93년, 정부는 통일방안에 「화해·협력」 단계를 명시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음.

(1)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정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에 따른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94.11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함.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94. 11. 8)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 북한 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속적으로 경협 확대
 -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 활성화」, 「시범경협」 우선 허용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조치내용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단, 대규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 투자설명회·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 사업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설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활동

(2)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수립 및 지원

- '95년에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 1. 3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
 - 수입자유화 등 대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97. 4. 1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 고시를 다시 개정
 -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각각 변경하여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입을 하도록 함.
 - 기존의 자동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 신설 등

(3) '98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98. 2.25)과 더불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추진을 천명
 - 정경분리원칙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이 불가피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겠다는 판단
- 정경분리의 의미는
 - 첫째,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협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확정·발표하였음.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8. 4.30)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의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

■ 주요 내용

① 접촉·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 20일→15일, 방북 : 30일→20일)

② 교역(「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을 거쳐 ' 98. 6.19 시행)

-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 유희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③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化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 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간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4) 교역질서 확립 및 절차 간소화 조치

- 정부는 북한물품의 부정반입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교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피해 구제·방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 거래형태(무상)로 인해 반·출입 승인을 요하게 되는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 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 99. 8.16부터 시행하였음.
- 또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 대상물품으로 분류코자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2000. 9.28부터 시행하였음.

(5)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이행 조치

- ' 00.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음.
- 이에 앞서, ' 00. 3. 9,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

- 화해·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였음.

「베를린 선언」(' 00. 3. 9)

- 쑤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 남북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공동선언」(' 00. 6. 15)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해결
 -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남북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
-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두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음.
-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며,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진행되므로 남북 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해나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음.
- 또한, 두 차례의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에 관해 협의하고,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00.12)에서 서명하였음.
- 그 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4개 경제협력 합의서 주요 내용

■ 합의서 주요 내용

가. 투자보장 합의서

-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함.
 - 아울러 투자 및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

-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함.

나.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열차·배·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토록 함.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회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함.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라. 청산결제 합의서

-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는행을 선정한 후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되,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하도록 함.
 -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음.
-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

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 등 협의

■ 합의서 발효시 기대효과

가. 투자보장 합의서

-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 감소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나.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다.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 앞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라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사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라. 청산결제 합의서

- 남북간에 청산결제 제도가 도입되면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 청산결제 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합의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결제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공식적·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력협력, 임진강수해방지,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경제협력의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음.

나. 민간분야 남북경제협력 현황

- '95. 5.17 (주)대우의 남포공단 사업 「협력사업」 승인, 고함물산의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협력사업자」 승인을 필두로 하여
- '01. 6월 현재까지 총 41개 사업자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 18개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 승인을 하였으며, 이중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협력사업자 13건, 협력사업 11건 승인
- ※ 성화국제그룹 등 4개 기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취소('99.12. 23)
- 태창의 금강산생물사업, 녹십자 의약품 제조사업 등은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

화자동차의 자동차공장 건설사업은 1단계 수리·개조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중이며, 2단계로 본공장(자동차 조립·생산공장)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담배인삼공사의 「한마음」, 「잇스」 등 담배임가공사업을 비롯,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분야 협력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 삼성전자의 S/W 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IT 분야에 대한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 이래 최대 규모 협력사업으로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의의가 있음.

- '98.11.18 첫 출항 이후, '01년 5월까지 818항차 40만 7,200여명이 관광하였으며, 남북한 직접 왕래과정에서 갖게 되는 접촉·대화·협력은 남북간 적대감 해소와 동질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00. 8 현대와 북측 아·태간에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이후, 현지 지역에 대한 측량과 지질조사, 공단운영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앞으로 동 공단이 개발될 경우,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 생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특히 신발·섬유 등 이른바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01. 6월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불	92.10.5 (95. 5.17)
고합물산 (합영, 합작)	광명성총회사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 나진, 선봉, 평양	686만불	95. 5.17
한일합섬 (합영, 합작)	은하 무역총회사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980만불	95. 6.26
국제삼사 (합영, 합작)	”	신발	”	350만불	95. 6.26
▲ 녹십자 (합작)	광명성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불	95.9.15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시멘트 사이로 건설	나진, 선봉	300만불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 (크레인 등)	”	500만불	95. 9.15
삼성전자 (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터	”	700만불	96. 4.27
▲ 태창 (합영)	릉라888무역 총회사	금강산 생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불	96.4.27 (97.5.22)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불	96. 4.27
▲ 한국전력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금호지구	4,500만불 →11,430.8 만불	96. 7.15 (97.8.16→ 99.8.10 변경)
▲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사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47만불	97. 5.22 (98. 3.13)
한 화 (합작)	청운산 무역회사	PVC장판 제조	평양, 남포	90만불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불	97.10.14
▲ 한국통신	체신부	경수로 건설 통신 지원사업	신포	·	97. 8. 1 (97. 8. 1)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삼성전자 (합영)	조선체신회사	전전자교환기등 통신 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불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평양,남포	400만불	97. 8. 1
신 원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의류·봉제사업	평양	100만불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해주	300만불	97. 8. 1
금오식품 (합작)	은하무역 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나진·선봉지대 시험 공단 조성	나진,선봉 (유현지구)	·	97. 10. 14
대상물류 (단독투자)	”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 지개발·운영	나진,선봉 (동명지구)	420만불	97. 10. 14
삼천리자전거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조립·생산	나진, 선봉	800만불	97. 10. 14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	가라비양식·생산	나진, 원산	65만불	97. 10. 14 (98. 8. 28)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대상국	경수로사업 부차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 6 (97.11. 6)
▲(주)마차커 뮤니케이션 (합영)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 지역	편당 25만불	97.11. 14 (98. 2. 18)
(주)에이스 침대(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 ·판매	평양 락랑 구역	425만불	98. 1. 9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 산 및 판매	평양	575만불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옥외광고(아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건물 내부벽면 부착광고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불	98. 2. 18
안성개발 (합작)	조선56무역 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 3. 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러선경제 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합영농 장 운영 및 계약재배 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4. 8 (98. 7. 27)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사업제승인일 (사업승인일)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 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99. 3. 25)	새품종 생산력 검증· 시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 6.18 (98.6.18→ '01.6.20 변경)
▲(주)현대상· 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99. 2. 25) (단독 및 BOT)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 (98. 9. 7)→금강산관· 광 및 개발사업· (99. 1. 15)	금강산	9,583만불 →1억8739 만불	'98. 8. 6 (98.9.7→ '99.1.15 변경)
▲(주)코리아· 랜드(합영)	묘향경제연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 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불	'98. 8.28 (98. 8.28)
▲ 백산실· 업 (합영)	선봉군 온실· 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포· 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 10. 28 (98. 10. 28)
▲ 현대전자· 산업, 한국통신, 은세통신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1단· 계: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금강산 관· 광지역내	13만불· (1단계)	'98. 11. 11 (98. 11. 11)
(주)해주· (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 1. 8
▲(주)평화자· 동차(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5403만불	'99. 6. 31(00. 4. 7→00. 10. 21 변경)
▲ 한국전력· 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금호지구	408억(PWC· 금액 포함)	(99. 12. 15)
▲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북경	727만불· →154.4만불	'00. 3. 13(00. 3. 13→04. 6. 16 변경)
(주)하나비즈· 닷컴(합영)	평양정보센터	남북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단동	200만불미만	'01. 4. 28
(주)엔트랙· (합영)	광명성총회사	공동제품개발을 위한· 가칭 「코려기술개발· 제작소」 건립	평양	400만불	'01. 4. 30

주) ▲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임.

2. 북한의 투자환경

가. 북한경제 현황

(1) 2001년도 경제시책 방향

- 북한은 '01년도에 당·군·청년보 「공동시설」을 통해 당해 연도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 '01년을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설정하고
- '고난의 승리적 결속' 및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경제력 회복을 위한 공장·기업소 구조조정, 노후시설 개체(改替) 등 실리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시대변화 적응을 강조하였음.
- '01년 「공동시설」에서 경제부문 시책으로
- 현존 경제토대의 정비를 중심과업으로 설정하고 생산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투자 보다는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기존설비 정비를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하며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부응하는 '우리식 경제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였음.
-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상해 푸둥지구를 방문, 중국 개방·개혁의 성공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내부변화를 강력 시사한 바 있음('01. 3).
- "18년만에 상해를 방문하니 변하지 않은 것은 黃浦江 하나 뿐이다. 상해가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뤄 현대화된 도시로 바뀌었다.", "앞으로 대남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시 발언)

(2) 북한의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 '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수출(8.0% 증가), 수입(46.5% 증가)이 모두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19.7억달러 내외로 추정되는 바
- 이와 같은 무역규모의 증가는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등 대외 무역환경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나) 남북교역

- '00년 남북한 교역실적은 425,148천달러로 최초로 4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전년도 333,437천달러에 비해 약 27.5% 증가하였음.
- 반입은 152,373천달러, 반출은 272,775천달러였음.
-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129,190천달러로 전년 99,619천달러에 비해 29.7% 증가하는 한편, 업체수도 19개가 증가한 151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품목도 72개 늘어난 257개 품목이었음.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 북한이 '00년도에 나진-선봉지대 개발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않은 점에 비추어 동 지역의 개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나진-선봉지대 접근로인 중국 훈춘~권하와 원정~나진간 도로정비(약 95km)가 추진중이나 중국 구간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 구간에서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조총련 기업의 투자(560만달러)로 수산물 가공센터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선 운반선용 부두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 「조선경제개발총공사」는 최근 중국 「廣東華夏環保生態科技有限公司」와 나진-선봉지대내

2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

○타이 록슬리 그룹 자회사인 Loxpac사와 북한이 공동설립한 NEAT&T(North 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Co.)는 320만달러를 투자해 국제전화용 게이트웨이 구축 및 호출기 사업을 추진

(라) 대외경제협력

○북한은 직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주변국들과 관계진전에 주력하였는 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 미 국무장관의 방북('00.10), 북·일수교 본회담(제9~11차), EU 의장인 페르손 스웨덴 총리 방북('01. 4) 뿐 아니라
 - '00년에 이탈리아 등 4개국, '01년에 독일 등 10개국과 수교를 맺는 등 대외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서방국가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하고 EU, 네덜란드 경험사절단을 초청('01. 2~3)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관계강화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 '00. 8월에는 ADB 가입의사를 재표명하는 등 국제기구 가입에도 적극성을 보였음.
- 또한, '01. 4. 5 최고인민회의에서 「가공무역법」, 「감문법」, 「저작권법」을 승인하여 대외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을 정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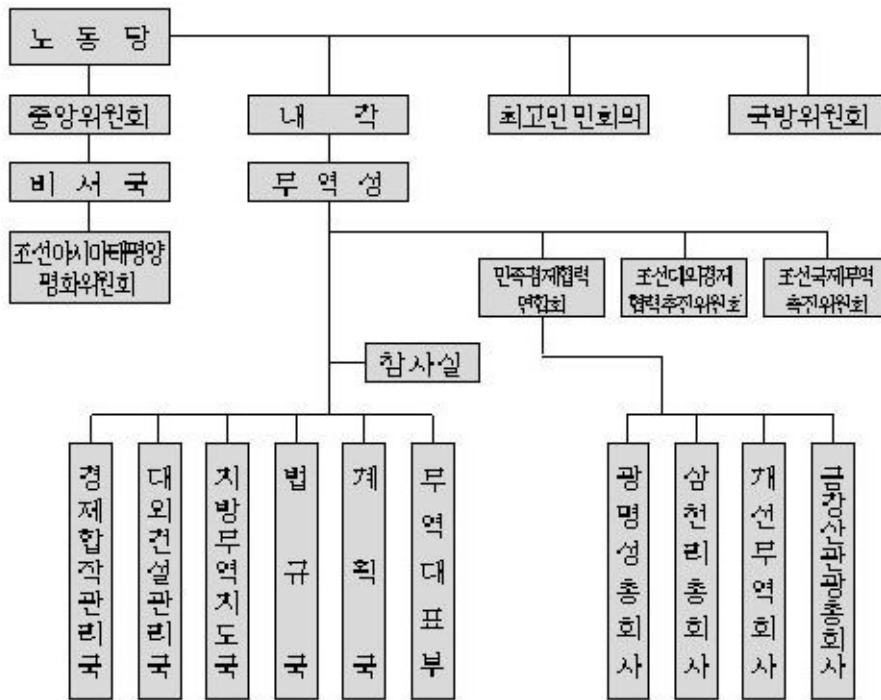
나. 북한의 대외경제기구 및 무역기구

○북한은 '98. 9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대외무역 관련조직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음.

- 조직개편의 특징은 무역성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과 무역상 아래 6명의 부상이 지역별 담당체제를 갖췄다는 점임.
 - 또한 각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40년대 출생의 젊은 인 물들이 많이 등용되었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임.
 - 북한은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각 도·직할시는 1개의 무역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음.
- 즉 무역성은 무역업무는 물론 세관업무, 외국회사와의 합영사업 및 운송, 대남교역 등을 담당함.
- 무역성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제협조관리국, 대외건설관리국, 지방무역지도국, 법규국, 계획국, 무역대표부 등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들을 두고 있음.
 - 특히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및 개방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고 있음.
 -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무역회사를 둔 무역업무 전담기구로서, 당초에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주로 맡아왔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인 서방국가와의 무역뿐 아니라 외자유치 부문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또한 북한은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무역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의 역점을 두었음.
- 기존의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13개 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시켰으며, 종전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으로 통폐합하였음.

- 또한 대외경제위원회가 존재할 당시에 12명이었던 부위원장도 내각 무역성에서는 6명의 부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음.
- 한편 대남경협 부문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산하로 알려진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산하에는 피복·경공업·농수산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광명성총회사, 대우 남포공단사업을 비롯하여 전자·중공업-화학분야에서의 무역 및 투자사업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삼천리총회사, 계약재배 등 주로 농업부문에서의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선무역회사, 그리고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금강산관광총회사 등을 두고 있음.

〈대외경제관련 기구 체계〉



다. 북한의 외

국인 투자 여건

(1)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사항

(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개념

○북한은 외국인 투자법 제2, 3조에서 외국투자자가 창설·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합영기업」,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의 세가지로 규정

○「합영기업」은 북한측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운영하며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며

-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고

-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함.
- 이들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투자비율, 경영권, 투자 가능지역 등인데
- 우선 투자비율은 합영 및 합작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기업은 100%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며
- 합영기업은 투자지분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공동으로 경영하며, 합작기업은 전적으로 북한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외국인기업은 당연히 외국측이 가짐.
- 투자가능지역은 합영 및 합작기업은 북한 전지역이 가능한 반면, 외국인기업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한정됨.

〈합영·합작기업의 비교〉

구분	합영기업	합작기업
근거법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및 시행규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시행규정
법인형태	북한의 법인(신규회사의 설립)	북한의 법인(기존회사도 가능)
경영권	투자지분 및 계약에 따라(이사회)	북한측이 생산 및 경영
투자형식	공동투자(투자액/지분비 동일) 회사설립이 중요	공동투자(지분비가 없음) 건설계약, 생산품이 중요
이윤배분	지분비에 따라 배분	합작제품 배분원칙
청산	북한측으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감	유한책임, 투자비율에 따라 청산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율

- 지난 '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정을 마련하였고, 「외국인소득세법」도 갖추었으며, 이후 '93. 4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94. 2에는 동법의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규정을 완성
-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등이 있음.
-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상은 북한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등이 포함됨.
-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가 기본임. 단,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기업은 14%, 북한이 장려하는 첨단기술 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임.
- 한편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를 적용.
-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 ▲ 차관 및 북한에 유리한 자금대부의 경우 이 자금의 이자소득
 - ▲ 장려부문 및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에서 10년이상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 봉사부문(서비스)은 10년이상 운영할 경우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
-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총 6천만원(북한원)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의 기업에 대해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되고, 한편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50%를 반환해 주며 하부구조건설사업의 경우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개인소득세는 북한내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북한내에 1년 이상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대상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 등
 - 소득세율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보수 1천원이하인 경우 면제이나 그 이상일 경우 내각이 정한 세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임.
- 재산세는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임.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5년간 면제
-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상속을 받았거나, 북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북한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 부담.
 - 상속재산은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 등
- 생산물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거래세 부담
 - 과세대상은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입금, 상업부문은 상품판매액, 교통운수·금융·관광 등의 서비스부문은 서비스 수입금 등이며, 거래세율은 내각이 정함.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서비스부문은 50%를 감면해 줌.
-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은 거주 또는 소재하는 지역의 재정기관에 지방세 납부
 -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 등

(2) 투자시 유의할 조건

(가) 체제의 특수성과 정보의 부족

- 북한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의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로동기의 부족 등으로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다른 투자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음.
- 투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축적한 투자경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투자의 하부구조 낙후

○에너지

- 에너지, 특히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하여 공장가동율이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한 예고없는 정전과 전압의 불안정은 기계설비의 가동에 애로로 작용

○철도

- 북한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는 98%가 단선이며 시설도 일제시대 건설된 것이 대부분으로 화물수송에 비효율적임.

○항만시설

- 대부분의 항구가 컨테이너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집안능력도 1~2만톤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편

○기타 전화, FAX 등 통신시설

- 폐쇄사회의 특성상 북한의 통신시설은 매우 취약하고 운영도 군사시설과 일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다) 기업경영의 제한

○생산제품의 시장확보 애로

○외화부족 현상으로 인한 과실송금의 불확실성

○계획경제의 특성상 북한내 원자재 조달계획의 애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생산지연 등 비용발생

○북한이 투자하는 현물 및 산업재산권의 정당한 평가문제

○기업경영에 대한 지방관리나 관청의 간섭과 직업동맹의 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문제

2장 남북경제협력사업 준비와 추진

1. 기본인식

- 개별기업들의 남북경협 추진경위를 보면, 남보다 먼저 북한에 뛰어들어 확고한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당장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 등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것 등임.
- 중국, 동남아 등 제3국 투자 여건과 비교해볼 때, 북한지역의 투자 이점은
 - 생산관리 차원에서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어 원활한 작업 진행이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 기술전수가 용이하며, 제품의 질이 국내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 노무관리차원에서 인건비 등 비용절감 요인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남북경협 추진의 문제점으로
 - 우선 북한과의 접촉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업이 성사되어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물류비 과다, 제품 판로 확보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며
 - 북한의 열악한 SOC, 경험추진과 관련한 북한의 법·제도 미비, 북한내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 등 북한내 사업추진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임.
 - 또한, 투자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 불가능, 남북관계 등 정치적 요인이 사업진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점들은 다른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기업의 노력과 남북경협 진전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북한주민 접촉 이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의 실무자들과 상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 협력사업(자) 승인단계에서 사업 추진 기업의 해당분야 사업실적,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과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이의 충족여부를 염두에 두어야 함.

2. 북한진출 전략 : 경제논리에 따라 신중히 접근

가. 개요

- 단기적으로는 거점확보 및 신뢰기반 구축에, 장기적으로는 투자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실적위주의 조급한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투자성과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
-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업 경험과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를 축적하고, 북한의 SOC 확충 등 여건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

나. 투자업종 선택문제 : 북한의 제도 및 투자유치 희망 분야를 고려

- 단기적으로 구매력이 없는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진출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을 남한의 내수시장이나 중국 등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경협 초기에는 의류, 신발, 가방 등 단순가공이 주를 이루었으나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외국기업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첨단기술 이전과 습득이 가능한 업종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득이 되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경향
- 실제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의하면 유망사업 분야 선정의 기준으로 자재비 비중이 낮은 품목(70% 이하), 납기여유가 있는 품목, 기계설비 투자가 가능한 품목, 기술전수가 쉬운 품목, 북한 당국의 중점 육성분야 등을 들고 있음.
-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등에서 투자금지분야, 제한업종, 투자장려 업종을 제시하고 있고,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도 투자유치희망 분야를 제시해 놓고 있음.
- 단기 유망업종
 -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설비를 북한지역으로 이전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분야
- 쥬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등 경공업 분야와 전기 전자제품 조립
- 쥬생필품, 식료품 분야도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유치 분야이나, 북한의 구매력이 없어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애로
- 국내시장 농수산물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농수산물, 임산물 가공 제품의 남한 반입이나 제3국 수출
- 중장기 유망업종
 -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부품 생산이나 조립
 - 완제품의 판로 문제를 고려하여, 최종재 또는 완제품 생산보다는 중간재 또는 부품 생산이 유리
- 그 밖에 바세나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전제품 조립, 하드웨어 부품 생산 및 조립,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
- 향후 반도체 등 첨단기기 생산설비의 대북 이전과 기술이전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바세나르협약

- 과거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국제협약으로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 및 군수용으로의 이중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에 대해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해당항목에 대한 북한으로의 관련물자 및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름.

다. 투자방식 및 형태

-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익 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의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투자초기에는 단순임가공 또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교역 등 투자업종의 성격과 부합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진전에 따라 공장설립, 자원개발 등 합영·합작의 직접투자 방식의 비중을 점차 높이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은 단기적 수익성이나 실적위주의 목표설정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투자성과에 바탕을 두며, 개별사업의 성과보다는 종합적인 사업성과나 실적에 의해 투자결정을 해야 할 필요.
- 중소기업은 중·단기적 측면에서 철저히 수익성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투자 회임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리스크가 낮은 소규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감소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 업종이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관련 사업이 북한내 특정지역 (공단 등)에 업종별·분야별로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단순위탁가공은 설비제공이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북자체가 불가능하며 원·부자재 조립 가공 공정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품질·납기 등이 불안정한 면이 있음.
-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은 설비제공 비용을 임가공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이며, 여건만 되면 방문도 가능하고 품질과 납기 확보에도 유리한 편임.

라. 투자지역 선정

- 입지여건 및 투자가능지역의 경제성, 시장접근성, 정치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인프라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
- 북한내 주요 도시 및 일부 항구도시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선호보다는 북한내 산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현재, 산업인프라,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평양지역이 가장 유리
- IT분야의 경우, 전략물자 반출금지로 인해 장비, 관련기술에 대한 대북반출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중국 북경, 단둥 등 제3국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진출방식 및 절차

가. 진출방식

- 대북 투자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음.
- 개별기업의 단독진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진출 방식
- 지역기업의 공동진출 방식
- 업종별 공동진출 방식
- 기 진출 업체와 공동진출 방식
- 외국기업과의 공동진출 방식
- 지금까지의 투자방식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주로 단독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일정 지역에 대한 공동진출 및 투자협력이 가능하게 된 대표적인 사업방식이 현대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성공단(경제특구)이 개발될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진출시 지역별·업종별로 대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북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업종이 같은 경우 기존 진출업체의 북한 현지 작업장을 활용,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 이미 북측의 경제단위와 신뢰를 쌓고 있는 기존 업체를 활용할 경우 개별 기업이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중소기업 차원에서 공동진출 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협동화사업이 있음.

- 협동화사업이란 3개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형태로서 현재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IMRI 등 3개 업체가 설비제공형 위탁가공방식으로 평양에 진출.

- 그 밖에 섬유, 전선, 한약재, 공구류 생산 분야 등에서 평양 및 남포지역에 공동진출을 추진중

나. 협력선 확보와 사업개시

(1) 개별기업의 협력선 확보방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북한 경험 담당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함.

- 공동진출의 경우 사업추진 주기업이 접촉하여 사업협의를 진행하고, 다른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초기에는 홍콩·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접촉하였으나 최근에는 북경·단동 등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경험담당자들과 직접 접촉·상담하거나 대북접촉 및 사업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소개를 통해 접촉·상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북경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북경대표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단동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동대표부

○민경련은 상주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두고 있어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연락이 가능

- 그러나, 일면식이 없는 경우 전화응대를 해주지 않으며 연락처도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첫 접촉은 북경이나 단동지역의 대북사업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체 직원이나 중국지사 직원, 현지 교포 및 현지인 등의 소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의 대남경협 협의기구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과거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로 중국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경협 문제를 사실상 전담
- 남한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해 광명성경제연합회를 확대 개편하여, '98년 5월말 현 명칭으로 개칭
- 회장은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았던 정운업이며, 산하에 조선금강산관광총회사, 광명성총회사, 개선무역총회사, 삼천리총회사 등이 있음.

· 연락처('01. 5월 현재)

: <북경> ☎ 86-10-6592-0268, fax : 86-10-6592-0260

: <단동> ☎ 86-415-212-4027, fax : 86-415-212-4057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현재 무역성 산하기구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의 투자·상담업무를 주로 담당(그러나, '98.10 이후 남한기업에 대해 방문·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연락처('01. 5월 현재)

: <북경> ☎ 86-10-6713-0245, fax : 86-10-6713-6711

■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94.10 설립 당시에는 당 외곽단체로서 비수교국과의 관계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경험을 비롯한 대남관계 전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주로 사회문화체육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관련 주요사업에도 관여
- 쥬북경에 상주인원 및 사무실이 없이 사안 발생시 2명이 한조를 이루어 평양-북경을 오가며 업무수행
- 최근 국내기업 가운데 위탁가공을 성사시킨 경험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인사들을 통해 민경련 등 북한 경험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단순교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를 통하는 것은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첫 접촉시 합영이나 합작사업에 준하는 300만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경련 대표부 사람들이 직접 나와 상담을 하거나 적절한 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
- 그러나 금액이 적은 임가공사업이나 반입 등에 대해서는 민경련 대표부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 대부분 중개인들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북한과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인적관계를 형성해 놓은 교포를 통해 북측 사업파트너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음.

(2) 경제단체를 통한 협력선 확보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센터의 경험 지원사업
 - 위탁가공교역, 합영사업 및 합작사업 형태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 대북사업 제안 및 협력선 알선, 자금지원 등을 실시
 - 대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정양식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기존 대북사업 업체를 통해 협력선을 알선받을 수 있고 자금지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가 매우 엄격하므로 일단 동 센터를 방문, 협의를 병행하면서 재무상태, 사업성, 추진의지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사업
 - 남북경협 희망업체를 발굴하여 북한과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북사업 기업체, 북측 대남경협담당자와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
 - '00년 11월 중소기업 방북단을 구성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구체적인 사업협의 및 계약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 향후 사업이 성사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맺게될 경우 중소기업의 대북경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을 확보하게될 것으로 전망
 - 대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

다. 추진절차

- 「Ⅲ. 남북경제협력사업 국내법 절차」중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세부 추진절차 참조

4. 경협추진시 고려사항

가. 일반적 유의사항

- 북한사회 및 북한 경험관계자들에 대한 이해 선행
 - 북한의 정치·경제 실상, 북측 관계자들의 경험에 대한 태도·입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북한은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사업진전 속도가 늦고 상부의 뜻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 바뀌기도 함.

· 북한은 우리 기업과의 경협사업이 국가적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철저하게 경제적 측면(business mind에 입각)에서 접근

- 북한이 특수지역이라는 개념에서 탈피, 동남아, 중국 등 외국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투자의 일반원칙과 국제적인 기준·원칙 등을 가급적 충실하게 적용하면서 접근

- 경제외적인 과중한 비용부담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망과 투자메리트 상쇄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

○신뢰에 기초한 사업추진

- 북측 경협담당자들도 일부 우리 기업들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남측 기업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협상 및 사업추진시 성실한 자세로 임함으로써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함.

- 단순한 호기심으로 투자하거나 회사 홍보목적으로 한 두번 방문 후 흐지부지 중단하면 불신만 심화되고, 신뢰구축에 시간이 걸림.

- 능력이상의 협력규모를 제시하고는 실현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최소한의 대북사업 절차나 남북경제교류 법규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

- 남북경협은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추진해야 하며 대북투자는 돌발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함.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추진

-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사안에 따라 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사안보다 여론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나. 계약 및 협상시 유의사항

○북측 상대방의 소속에 따라 기관의 위상과 협상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상에 임하기전에 상대방의 소속 계통을 파악해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구체적인 면담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되, 원칙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각자의 의무·권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 추후에 문제가 되면 서로의 해석이 달라 근본개념이 틀어질 수도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협상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 상대방의 의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뜻밖의 요구에 대비

- 사업에 관련되는 사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북측 상대방이 국제 상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사회주의권과의 계약선례를 준비

○체제 및 정치지도자에 관한 얘기는 자제

- 상대방이 우리체제에 대해 함부로 표현할 때도 곧바로 시정해 주고 충고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됨.

다. 물류, 통신, 생산관리 등 기타 유의사항

○통신문제

- 남북간 직접 통신이 되지 않아 생산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움. 대부분 중국 현지법인이나 국내 기업의 북경지사의 협조를 받아 연락을 취하고 있음.

○북한시장의 구매력 문제(북한 현지 판로 확보 부재)

- 생산전량을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3국 수출도 아직까지 남한에 반입한 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관리문제

- 원부자재 대북 반출후 완제품이 우리 항구에 입고되기까지 중간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진과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현지에 드나들 수 없으며 합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장기체류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도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산 제품의 외국시장 경쟁력

- 관세율 측면에서 미국, 일본에서 최혜국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시장의 경우 의류제품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4~27.8%이나, 북한산은 3배에서 10배의 일반관세가 부과됨.

- 일본시장의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4.5~8%이나 북한산에 대해서는 16%가 부과됨.

- EU국가들은 최혜국대우에 13%, 북한산에는 평균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설비의 해체·수리·보수, 부대시설의 공급 등 자재 및 설비 부담 등으로 자금 회수 기간이 긴 편임.

- 설비투자의 경우 기본 설비뿐만 아니라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차량 등 간접적인 요소들도 투자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사업의 수익성 계산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인천-남포간 정기 해상항로가 주 1회 운항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편도 800달러(국양해운, 20ft 컨테이너 기준)로 중국과 비교하여 2.5배 정도 비쌌.

· 나진-부산 정기해상항로 : 동룡해운에서 월 3항차 정기선박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중국 동북3성 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 남북경협 지역이 확대되는 경우 북한지역의 물동량을 상당부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운임은 400불(20ft 컨테이너) 수준.

- 남포항 하역설비의 낙후, 잦은 정전 등으로 체선이 발생하고, 통관과정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배후 물류기반이 취약(전기, 철도, 육상장비, 수송차량, 도로망, 창고, 연료난)한 상태임.

- 남포항-공장까지의 운송은 컨테이너 채로 보세운송(door)되는 것이 아니고 남포에서 통관 후 일반 트럭으로 운송되고 있음.

- 북한에서 발행하는 B/L 등 선적관련 서류가 우리의 적하목록 신고시스템(EDI)과 상이하여 매번 선박의 국내 입항시 선적화물 및 컨테이너 번호에 대한 재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시 접안 및 하선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납기를 맞추는데 또다른 애로 요인으로 작용

- 그밖에 화물 분실로 인한 클레임, 컨테이너 회전율 저하 및 분실·망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현재로서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

- 원부자재 반출시 사전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여 선적함으로써 추가 횡수를 줄이고 제품 반입시에는 북한 현지공장에 우리 기술자와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제품 반입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 등을 절감

- 최종목적지(공장)까지 운송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물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SHIPPING MARK와 포장에 유의

- 동일 지역 진출업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즉 진출업체간의 정보의 공유, 공동 물자수송, 포장재(박스,

스치로폴, 포장비닐 등) 생산업체와의 공동 진출 모색

○위탁가공사업이나 협력사업은 제품 반입시 관세면제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의 비용 발생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나

- 앞으로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투자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면 남북 경협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말하는 대북협상 가이드라인

1) 옷차림

감색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 적당. 옷차림에서부터 최대한 예의를 갖출 것.

2) 테이블 매너

몸을 의자에 기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북측 상대가 거만하게 여길 뿐더러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3) 웃음

협상과정에서 적당한 웃음은 좋지만 지나칠 경우 북측 상대가 자신을 비하(卑下)한다고 자칫 오해할 수 있음.

4) 질문요령

질문은 적게 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이 많으면 ‘보안’에 민감한 북측 사람들이 싫어할 뿐더러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음.

5) 인내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끈뚱이 참는 것이 좋은 협상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3장 남북경제협력사업 국내법 절차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세부범위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가.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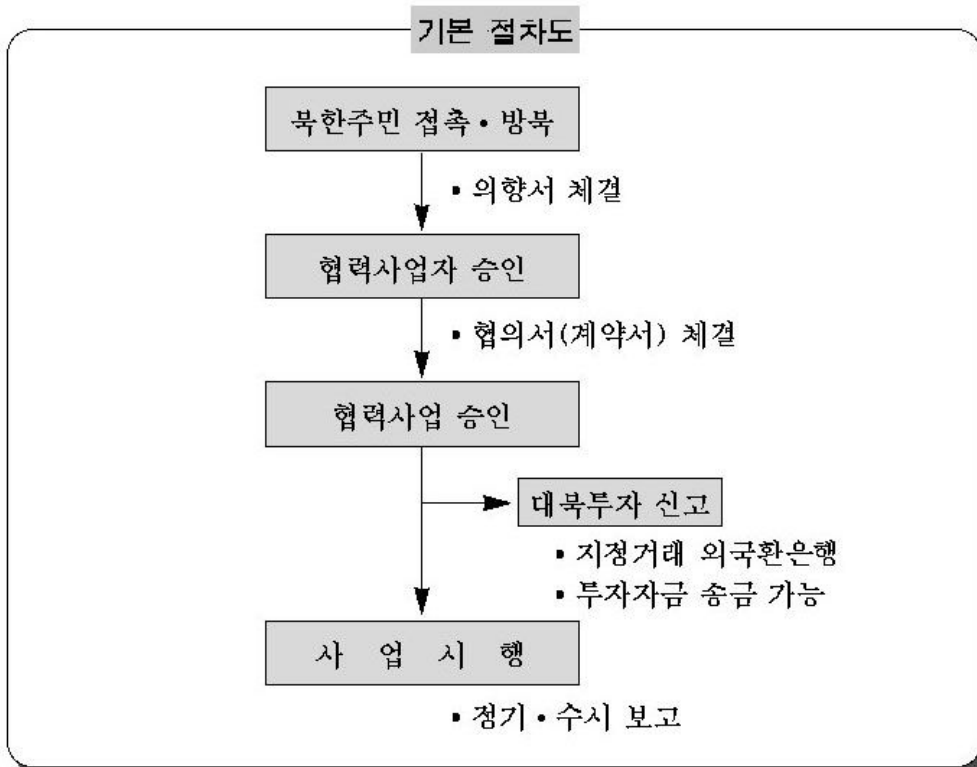
○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추진

- 과당경쟁 등이 우려되는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진출지역을 한정하여 승인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접촉·방북」, 「협력사업자」 승인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정을 통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한편, 승인된 협력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실시할 사업만 협의·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하도급화하여 대기업이 대북진출의 장구화하는 것을 방지

나. 경험추진 기본절차



북한주민접촉

(1) 접촉의 개념

-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으로
 -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이나 중개인을 통한 의사교환 모두 접촉에 해당
 - 북한국적 미소유자라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등 국외단체의 구성원도 북한주민으로 간주

(2) 접촉 승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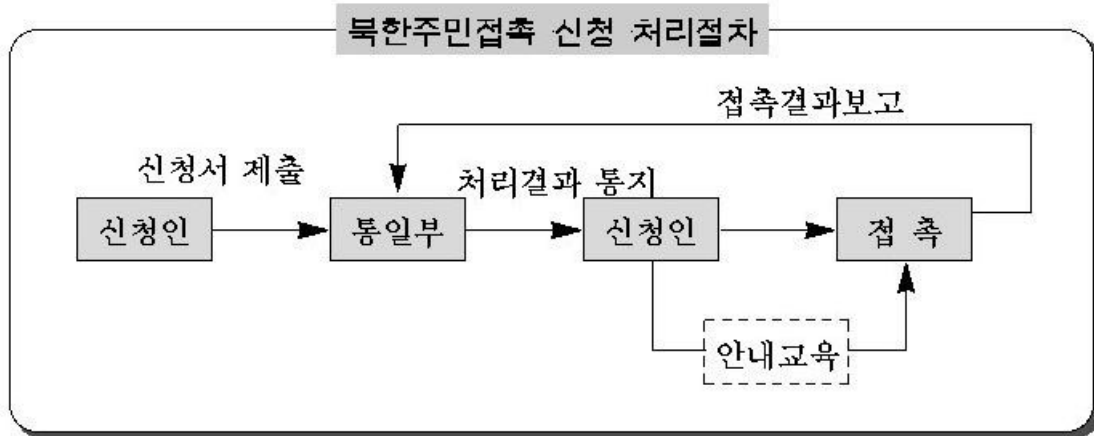
- 남북교역 상담 및 경제협력사업 협의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신청

○우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3) 접촉 안내교육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을 것을 승인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회사소개서 등 참고자료 1부

(4) 접촉 결과보고

○접촉 결과보고는 접촉후 10일 이내에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추진해야 함.

(5) 승인 유효기간 및 재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 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접촉 가능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며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는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단, 기승인받은 공문의 사본 첨부 필요)

○승인 유효기간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를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접촉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6) 접촉 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

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접촉결과)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승인 받은 것으로 같음

사후 신고 사항

-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③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 ④ 교역 및 경협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⑤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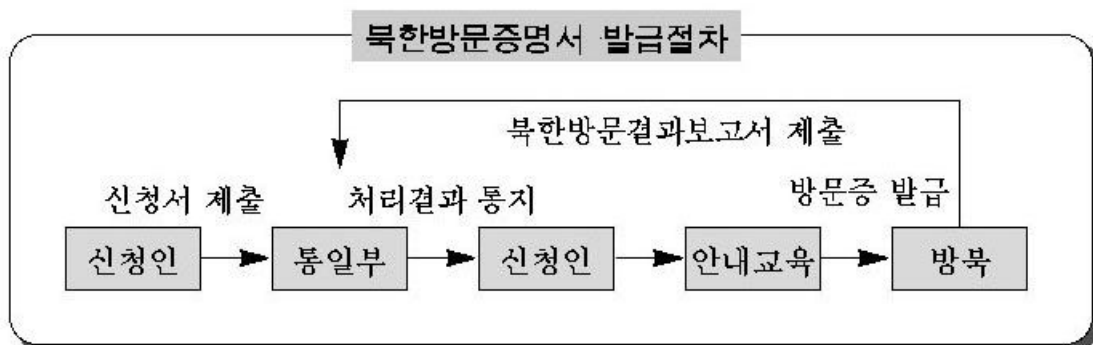
북한방문

(1) 북한방문의 개념

- 남북한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
- 따라서 관문점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2) 방북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예정일 2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진(천연색 3.5cm×4.5cm)
- 초청장(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증서류) 1부
- 방문계획서, 회사소개서 1부

(3) 방북자 안내교육

- 방북예정자는 방북전 방문 안내교육(통일교육원에서 실시)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임.

(4) 출입 심사

- 방북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방북할 때는 방북증명서 외에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북한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비자는 북경과 심양의 북한 공관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발급수수료(2001.5 기준, 50\$)와 반명함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함.
 - 항공편 : 북한의 고려항공(☎8610-6501-1559)이 주 2회(북경 : 화, 토, 심양 : 수, 토) 운항하며 요금은 왕복기준으로 북경-평양 295\$, 심양-평양 152\$ 수준임.
 - 북경 참고 전화번호
 - 대사관 통일협력관 8610-6532-0290(교환 326)
 - 무역협회 8610-6505-2671~3
 - KOTRA : 8610-6505-2324~7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 품목
- 남한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 고시) 참고
 - 북한
 - 반입금지 : 6배울 이상의 망원경, 휴대폰,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적이거나 사진
 - 반출금지 : 역사유물 등 문화재, 모든 종류의 씨앗, 식물, 동물

(5) 방문 결과보고 및 방문증명서 반납

- 북한지역을 방문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를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6)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함.
- 재외국민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이며,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유학생, 교환교수 등 단기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신고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 귀환후 10일내에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7) 수시방북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3년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수시방북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수시방북 승인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이외에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방북기간 동안의 방북예정서(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자가 실제 방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방북시마다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을 첨부한 북한방문신고서를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함.

- 또한 방북자는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북한방문증명서를 통일부에 반납하여야 함.

협력사업자 승인

(1) 개 요

○북한측 사업상대자와의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의향서(양해각서 포함) 체결 등 협력사업 시행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면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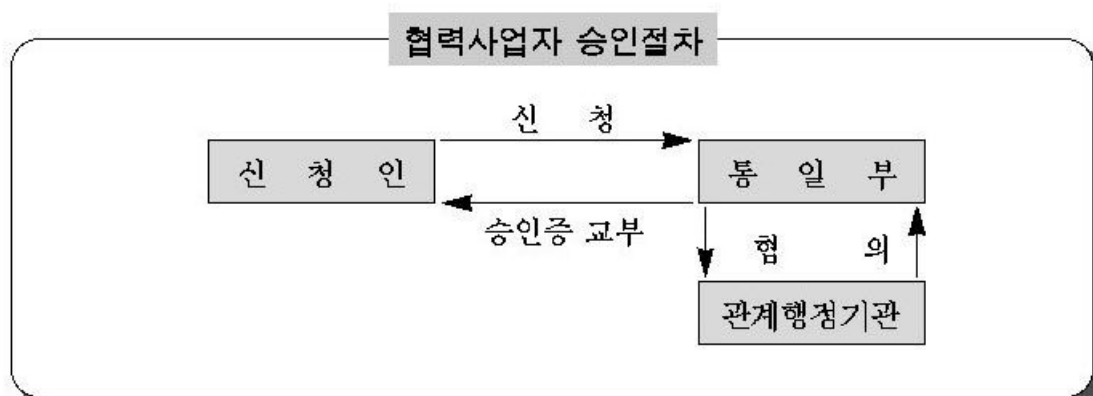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북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등의 구비여부를 심사

(2)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해야 함.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후 관련규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

-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구비서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1부
- 의향서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

(3) 구비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① 의향서

- 사업추진에 관한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합의로 정형화된 표준양식은 없음.
- 의향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동추진키로 제기된 사업들의 목록

- 제기된 사업중 우선적으로 「협의서」 체결을 추진할 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사업개요에는 사업내용, 규모, 장소, 당사자, 추진방식, 추진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 포함)
- 작성명의
 - 우리측 : 사업수행 당사자 또는 사업수행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 북한측 : 사업수행 당사자 또는 대외경협창구(대외경협창구일 경우 사업수행 당사자 확인 필요)
 - ※ 사업수행 당사자는 자기명의로 최종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②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 개요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5조)

- 사업목적
- 추진경위
- 사업수행 방식
- 사업 상대방
- 진출지역
- 생산품목
- 생산능력
- 예상 투자규모 · 투자비율
- 자금조달 방법
- 제품판매 계획
-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③ 사업실적 증명서류

- 추진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사업 및 수출입 실적(남북교역실적 포함)
- 사업실적 인정범위(경협처리규정 제4조)
 - 제조업 : 해당 협력사업의 주생산품목에 대한 생산 · 수출입 실적, 관련 기계 · 설비의 생산 또는 수

출입 실적

-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 기타 특수업종 :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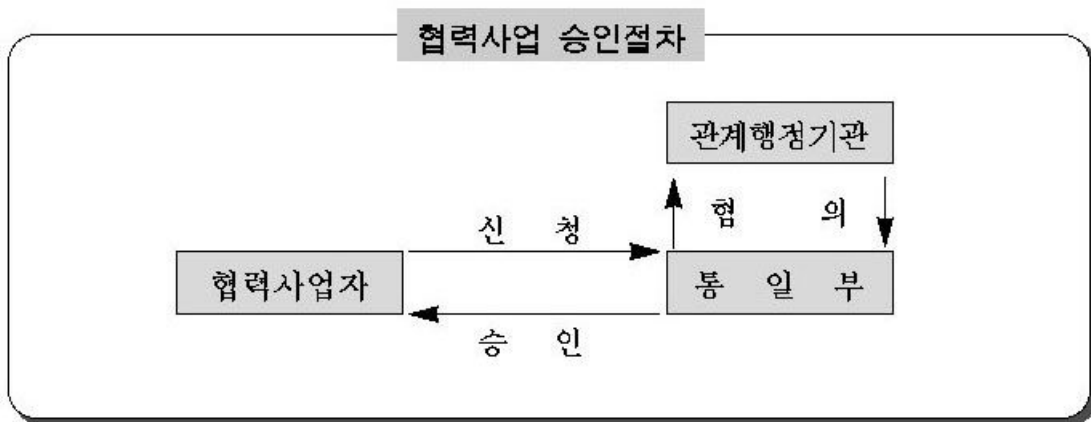
(4) 승인요건

- 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②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 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협력사업 승인

(1) 개요

- 협력사업은 협력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북한측 당사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 이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대북투자가 가능하게 됨.
- 협력사업 승인이후 대북 투자자금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로 송금이 가능하고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물품은 통일부장관에 신고로서 반입과 반출 가능
- 협력사업 승인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음.

(2) 협력사업 승인절차

-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합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후 승인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함.
- 협력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함.

구비서류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사업계약서(협약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1부
-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단독투자인 경우)

(3) 구비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 제1항)

-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 생산 및 판매 계획
- 조직 및 인력 계획
- 추진일정 계획

②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사업상대자의 연혁, 조직, 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③ 협약서

○협약서는 합의서, 계약서 등 용어를 불문하고 북한측 사업상대자와 추진예정 사업에 대하여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남북한 모두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당사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단독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관장하는 대외경협창구 등 북한측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함.

- 다만, 북한의 단순 경협중개창구와의 협약서 작성은 불인정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 제3항)

-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구(이하 “회사 등” 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 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 판매·처리 방법, 자재조달 방법
- 당사자의 임무

-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효력발생 조건
-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④ 북한당국의 확인서

- 확인서는 내각 등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경협처리규정 제9조 제4항)
 -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4) 승인요건 및 검토기준

(가) 법적 승인요건(시행령 제35조)

- ①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②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 ③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④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 ⑤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세부 검토기준(시행령 제34조 및 경협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중심으로 판단)

- ① 승인 및 투자시점에서 △협력사업자로서 자격·능력, △과당경쟁 여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 ②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i)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 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ii)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 iii)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 ③ 「협의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북한당국의 확인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⑤ 투자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i) 사업의 수익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자금 조달·운용의 적정성
 - ii) 투자대상지역의 수송·전력·통신·용수 등 산업입지 조건, 산업입지 조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해결방안 확보여부 검토
- ⑥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체제 개방에 대한 기여도 등

(5) 사전 조정

(가) 직접 조정

- 「협약서」 조정 : 협약서를 최종 체결하기 전에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함.
- ※ 협약서 체결시 반드시 양측 당국의 승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사전조정
- 승인단계에서 조정 : 협약서 체결전 조정이 안된 경우 또는 조정과 다르게 협약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승인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내용은 승인시 조건으로 부과함.
- ※ 「협력사업」 승인의 경우, 북한당국의 확인서와 북측기업과의 최종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협약서가 사전 조정되도록 함.

(나) 민간업체 자율적 조정

- 「협력사업자」 승인검토시 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
- 민간업체 자율조정도 가급적 협약서 최종 체결전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함.

(6)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음(법 제18조 제1항).

(7)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 협력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북측 사업상대자와의 사업시행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8조제2항).
- 제3국에서의 북한인력 고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현지공관에 북한 노동력 고용승인 사실을 통보하고, 현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됨.
- 보고하여야 할 사항(시행령 제38조 제1항, 경협처리규정 제12조)

-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 사업의 착수
- 사업진행상황
-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 회사 등의 규약
-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 취득 사항
-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
-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증빙서류 사본

○ 보고시한

- 사업진행상황 :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
- 회사 등의 규약 : 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증명서 취득상황 :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사항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북투자 신고

(1) 개요

- 정부는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포함)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규정인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경부고시 1995-23호, '95. 6.28)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북투자를 위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행위가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거, 외국환관리법상의 별도 허가없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만으로 투자금의 대북송금이 가능함.
- 또한, 북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영업활동자금 포함) 지급의 경우에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가능
- 북한내 사무소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지급의 경우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가능
- ※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에서는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북한지점이라고 하여 비영리적 활동을 주로하는 북한사무소와 구분하고 있음.
- 북한지점과 북한사무소를 총칭하여 북한지사라고 하고, 국내 모기업이 북한지점에 영업기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 북한지점 설치는 협력사업 승인 사항임.

(2) 대북투자 신고 절차

-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현지법인의 경우, 신고받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 통보

대북투자 신고 구비 서류

- 대북투자신고서 1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사본) 1부
-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사본) 1부
-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사본) 1부

(3) 투자금의 송금 등

- 대북투자 신고를 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필요
- 현물투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북한 노동력 고용에 따른 임금지급은 남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현지법인이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국내 모기업이 북한 또는 현지법인으로 송금

(4) 투자금 등의 회수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

-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필요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함.

(5) 외국환 관리상의 사후관리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 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 후 1월 이내
- ②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 ③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 ④ 청산보고서 : 청산 후 2월 이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자의 승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경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북한내 지점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①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 순이익금 처분내역 :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
- ② 지점설치 완료보고(등록증 사본 첨부) : 설치 완료후 20일 이내
- ③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취득·처분내용 보고 :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
- ④ 반기별 영업활동상황 보고 :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은 북한내 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점의 폐지를 재경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① 당해 북한지점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 ③ 기타 당해 북한지점의 현지 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및 승인취소

(1)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변경승인은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과 협력사업 승인사항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 >

-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가 동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부장관의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31조 제1항).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의 절차, 처리기간 등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비서류

-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자 승인증(원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구분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분야의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1부

< 협력사업 변경승인 >

-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동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부장관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7조 제1항).
- 협력사업 변경승인의 절차, 처리기간 등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구비서류

- 협력사업 변경승인신청서1부
- 협력사업자 승인증 사본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 제2,3,4호의 서류 각 1부

(2)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 동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사유

-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 ②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협력사업자 승인요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③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 ④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 협력사업에 대한 동일부장관의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시행내용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⑥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⑦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절차

-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 협력사업자 승인취소 예정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준용법규 및 특례, 제재조치

(1) 준용법규

-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법률을 준용함.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준용법률(법 제26조 제3항)

- ① 외국환관리법
- ② 외자도입법
- ③ 한국수출은행법
- ④ 수출보험법
- 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⑥ 법인세법
- ⑦ 소득세법
- ⑧ 조세감면규제법
- ⑨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 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준용법률(시행령 제50조 제3항)

- ①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세기본법
- ③ 국세징수법
- ④ 부가가치세법
- ⑤ 특별소비세법
- ⑥ 주세법
- ⑦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⑧ 교육세법

⑨ 식물방역법

⑩ 가축전염병예방법

(2) 특례규정

(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자에 관한 보조금 등 지원(법 제24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남북간의 반출·입 물품 등에 대한 과세(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5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함.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함.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함.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함.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함.

(다) 남북한 방문자 휴대품 등에 관한 과세특례(시행령 제52조)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함.

(라)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시행령 제53조)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 제6호(법인세법) 내지 제8호(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을 준용함.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음.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제재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 제1

항).

- 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 ③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 ④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북한주민 접촉,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 ⑤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의 미수범도 처벌함(법 제27조 제2, 3항).

-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 ②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법 제28조, 양벌규정).

3.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가. 개 요

(1) 사무소의 개념 및 기능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내에 설치하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을 말함.

○국내기업 등의 북한지역 사무소는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사무소」와 같이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영리적 활동을 주로 함.

-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 가능

사무소 업무활동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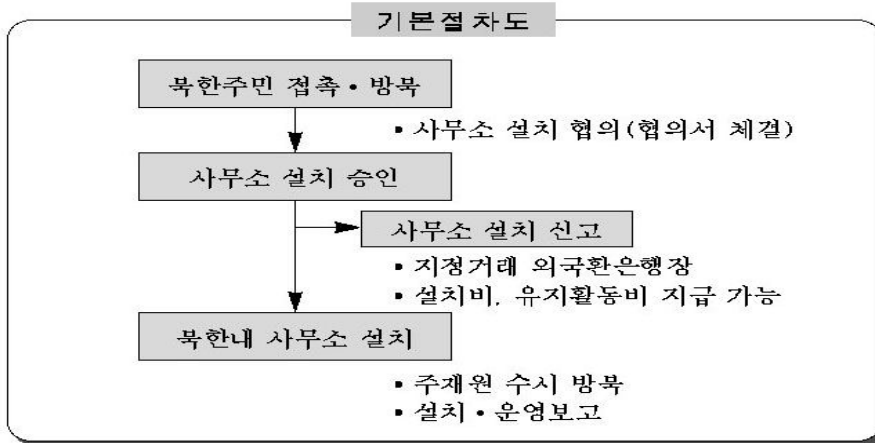
- ①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 ②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 ③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 업무

나. 기본방침 및 승인범위

(1) 기본방침

○사무소 설치 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에 한정

- 사회·문화분야 사무소 설치
추후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허용여부 검토
 ○주재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대한 북한당국 보장이 전제

(2) 승인범위

- 국내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비영리적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알선, 자문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무소의 업무활동 범위는 국내 모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기본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능에 한함.
- 주된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승인 필요
- 합병·합작 등 주된 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소 설치의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 ※ 국내 모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보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지역에 사무소 설치시, 국내 모기업이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세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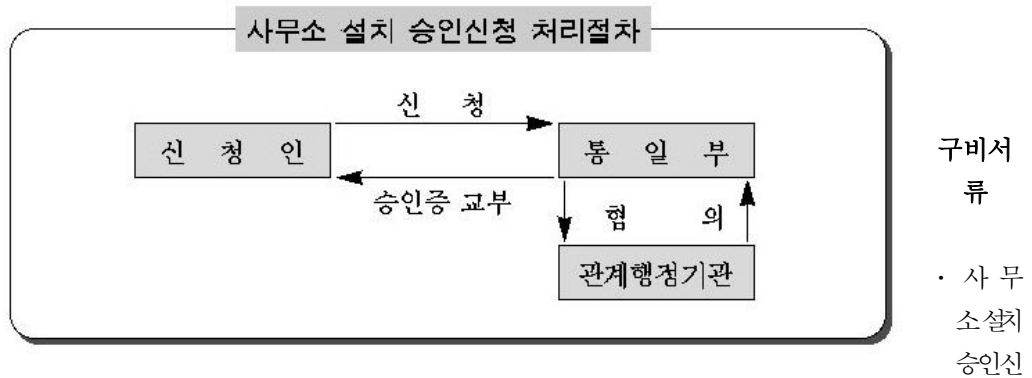
북한주민 접촉·방북

※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세부 추진절차중 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부분 참조

사무소 설치 승인

(1) 개요 및 절차

-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후 내부검토를 거쳐 지침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무소 설치의 승인을 하게 됨.
- 사무소 설치 승인신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함.



청서 1부

-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협의서) 1부
-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1부
-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1부
-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1부
-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등에 관한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2) 승인요건 및 검토기준

(가) 법적 승인요건(지침 제4조)

- 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 ②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③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세부 검토기준(지침 제3조의 승인신청서류를 중심으로 판단)

- ① 국내 모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자격·능력 여부 검토
- ② 사무소가 △남북경제교류협력 목적인지 여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기능이 비영업적인지 여부 검토
- ③ 「협의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남북간 왕래, 통신보장 등에 관한 북한 당국의 확인 여부

사무소 설치 신고

(1) 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

- 북한내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대북송금 등이 가능함.
- 북한내에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북한사무소 설치비 지급

- 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경비를 말함.
- 현물반출의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설치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 개산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3) 북한사무소 유지활동비 지급

-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기본경비와 기타경비

로 구분됨.

- 기본경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①전기, 가스 및 수도료, ②전신전화료, ③동산 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 임차료, ④제세공과금, ⑤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⑥기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기타경비는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다만,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내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함.

(4) 외국환 관리상의 사후관리

- 북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북한사무소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북한사무소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사무소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무소 보고사항

-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북한 현지 법규에 의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무소 설치 행위 완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자는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 사무소 주재원의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

반기별 활동상황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 ②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 ③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 ④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 ⑤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 ⑥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내용변경 · 폐지

(1) 사무소의 내용변경 신고

-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한 후 설치목적,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임.
- 북한사무소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 사무소의 폐지

- 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폐지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사무소를 폐지한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은 북한내 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사무소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당해 북한사무소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당해 북한사무소의 현지활동상황 및 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 고용

가. 기본방침

- 소규모 단순 기능직 고용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규모, 직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노동자의 탈출, 망명요청, 노사갈등 등에 대한 처리책임 및 해결방법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북한당국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추진
- 투자지분,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등을 통해 국내 모기업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보된 현지법인에 대하여 허용
- 임금, 복지후생 등은 현지국에 고용되어 있는 제3국 인력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물 등 부가급제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

나. 세부 추진절차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 절차는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절차와 같음.
- 다만,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시 국내 모기업이 제3국에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한 실적, 북한 인력을 실제 고용할 현지법인이 외국 노동자를 고용한 실적 등을 사업실적으로 인정하며,
- 사업승인시 외교통상부를 통해 현지공관에 승인 사실이 통보되고, 현지 공관에서 사항을 파악·관리하도록 조치

5.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

- 대북투자를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현지법인의 사업목적 변경 등을 통하여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모기업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추진
- 국내 모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라도 이사회 구성·의결권 등을 통해 국내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 가능
- 현지법인을 통한 대북투자 승인은 현지법인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 현지법인 또는 국내 모기업의 사업실적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구체적인 절차는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과 같음.
- 의향서, 협의서 작성명의회자는 국내 모기업이나 현지법인이 모두 가능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사업실적은 국내 모기업이나 현지법인의 사업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현지법인 설립인가서, 현지법인의 소개서 등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함.

6.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 개 요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은 남북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에 대해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반출·입 자금대출, 손실보조, 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
-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용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손실보전, 미결제채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지원 가능

자금종별	지원한도	이자율	기 간	채권보전
주민왕래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무 상	
문 화·학 술·체 육 협 력 지 원 자 금	소요자금 범위내 (예상수익금제외)		무 상	
손 실 보 조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관련 손실의 90% 범위내	입부취급 수수료 : 0.1%	대금결제기간 또는 사업기간 이내	-
경 제 협 력 사 업 자 금 대 출	소요자금의 60% 범위내(중소기업 은 70% 범위내)	연 6.0%	8년 이내(취 기간 3년 이내 포함)	담보 또는 신용
반출·반입자금대출				
·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	소요자금의 60% 범위내(중소기업 은 70% 범위내)	연 6.0%	2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자금	소요자금의 60% 범위내(중소기업 은 70% 범위내)	연 6.0%	1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자금종별	지원한도	이자율	기간	채권보전
·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	소요자금의 60% 범위내(중소기업 은 70%범위내)	연 6.0%	2년 이내	담보 또는 신용
채무보증	피보증인과 용자 은행간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함	당해보증자 기간에 30일 가산기간 이내	담보
금융기관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내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별도로 정함		
금융기관용자자금	대출취급액범위내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별도로 정함		
미결제채권인수	대금결제계좌의 미결제 채권액 범위내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별도로 정함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별도로 정함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자금	남북한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결정에 따름			

나. 자금대출

(1) 자금대출 대상

○기금으로부터 자

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간에 반출·입을 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 포함)으로 대출제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경제협력사업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
- 농업 및 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 시행자
- 물류비 절감 등 경험여건 개선사업 시행자

- 대출제의 대상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 취급 가능)
 - 기금의 지원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다음의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 가능)
- 주채권은행이 '회생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기타기업'), '정상화불가' 로 분류한 기업
-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기업
-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본 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을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2) 대출비율 및 조건

○대출비율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60 범위(중소

기업자는 100분의 70 범위) 이내임.

○대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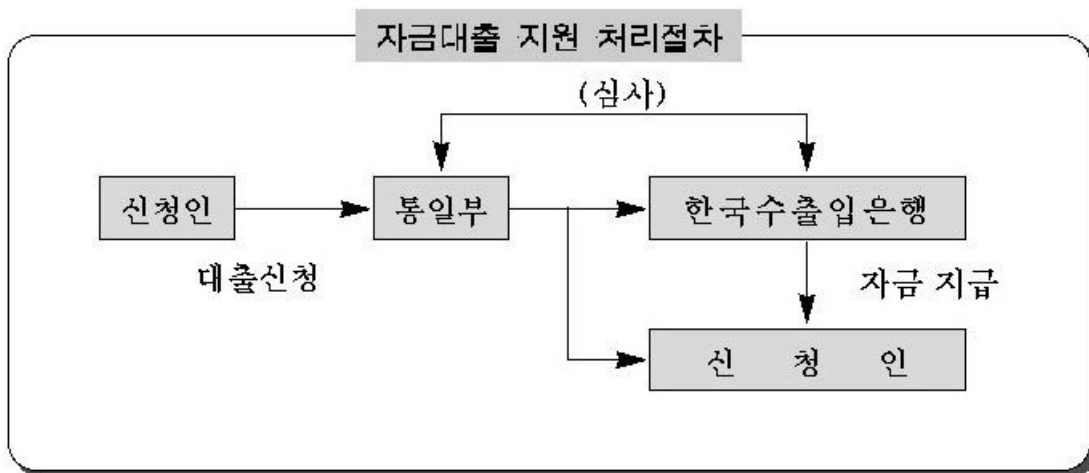
- 반출·입 자금대출 및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의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참조
-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음.

- 대출형식 : 원화 표시 증서대출
- 이 자 율 : 연 6%
※ 이자는 매 6월 단위로 후취 원칙
- 연체이자율 : 연 15%
- 대출기간 :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 원금상환 : 연 2회이상 정기분할상환 원칙
※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음.
- 채권보전 : 담보 또는 신용(차주 등의 신용도와 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음.

(3) 대출절차

-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함.
- 통일부장관의 지원방침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받을 수 있음.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승인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대출 신청 내용
- 이사회 기채 결의서 1부
- 차주, 제작자, 사업 상대자의 개요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4) 대출금 상환

-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여야 함.
- 북한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한 자는 약정된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기한 내에 조기 상환하여야 함.
- 현금으로 상환받은 경우 : 10 영업일 이내
- 물품으로 상환받은 경우 : 30일 이내

○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정한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연체이자 징수

(5) 대출받은 자의 의무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정한 기한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식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4월 이내
-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증빙서 첨부) : 회수일로부터 2월 이내
- 청산예정보고서 : 청산결정 후 1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일로부터 2월 이내
-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해당 사실 발생 후 2월 이내

○대출받은 자는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손실보조

(1) 손실보조 대상

○기금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조 대상은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함.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계속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른 투자원본,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배당금인 경우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2) 손실 인정범위

-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범위 내이며,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범위 내임.
-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에 따른 손실의 경우에는 주식 및 지분의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손실보조 제외대상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조약정 효력발생(업무취급수수료 납부)이전에 발생한 손실
-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손실보전을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청 및 약정 절차

-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손실보조약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동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의 지원방침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 신청자(이하 '피약정자')와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게 됨.
- 피약정자는 업무취급수수료(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1부를 교부받음.

구비서류

-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1부
- 사업증인서 사본 또는 사업증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 계약서 사본 1부
- 손실보조약정 신청액 산출명세표 1부
- 신청인,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1부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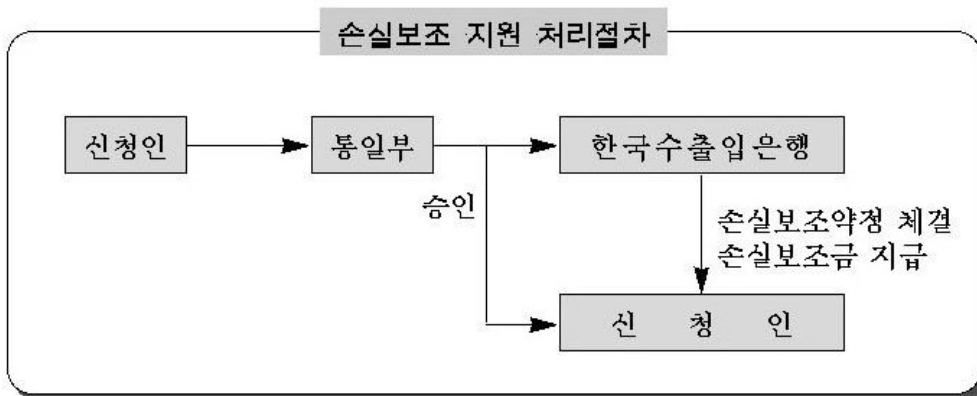
(4)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피약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취급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그 약정 범위내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
- 피약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이 취소·해지될 수 있음.

-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약정체결 당시에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아니한 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법령 및 손실보조약정을 위반한 때

○

손
실
보
조
약
정
을
체
결
한
후



피약정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역이나 용역의 제공·송금 등의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에 한하여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5) 손실보조 신청 및 지급범위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손실보조 신청서 2부
-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1부
- 손실보조약정 증서 사본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손실보조금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인정 범위의 100분의 90 이내,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함.

-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음.

(6) 피약정자의 의무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약정 체결 후 준수하여야 할 약정 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물품의 반출, 용역 제공, 자금의 송금 등 이행통지
- ② 손실위험 발생 통지 및 미회수금의 회수 노력
- ③ 기금수탁관리자의 대위권 행사시 필요한 협조
- ④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 제출(매 6개월마다)
- ⑤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조금 반환
- ⑥ 기타 필요한 자료 제출, 보고 및 조사 협조

라. 채무보증

(1)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반출·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②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임.

※ 의뢰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

※ 수혜자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2)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형식 : 증서에 의한 보증

○보증금액 :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

○보증기간 :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보증 및 대지급 요율 :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

○담 보 : 남한내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 제공

※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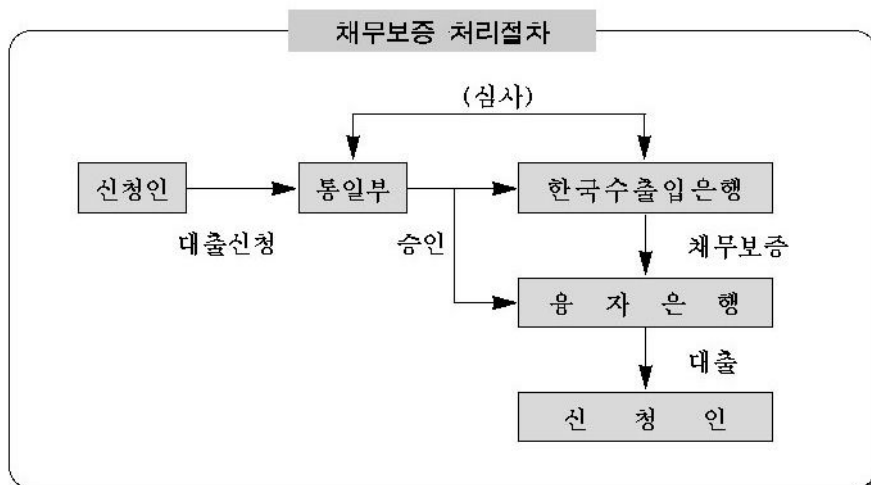
(3) 보증절차

-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한 후 기금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함.
-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 지원방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하게 됨.

구비서류

- 채무보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이사회 기채결의서 1부
- 담보제공 계획서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통일부의 승인을 받으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용자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함.



4장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북한내 절차

1.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법 현황

- '80년대 들어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정과 개혁·개방의 성과에 자극받아 외자 및 외국 기업, 기술 유치에 대한 관심 고조
- '84년 「합영법」 제정, '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등 6개의 법규 및 시행 세칙 마련
- '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면서 외자에 대한 개방방식을 지역개방의 형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헌법적 근거 마련
-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7조는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라고 규정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통한 개방과 연계, 50여개에 달하는 외자유치관련법규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도입·정비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외국인투자법」을 기본법으로 투자가능한 기업형태를 규정하는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외국인투자은행법」이 있으며, 모두 하위규정이 있음.
- 무역지대 관련법으로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및 이에 기초한 「외국인출입규정」, 「외국 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외국인채류및거주규정」 등이 있음.
- 합영기업보다는 합작기업을 선호
- 합영기업은 투자지분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외국투자자도 기업경영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기업인의 장기 채류 및 상주를 북한 당국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
- 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는 투자 및 이익배분에만 참여하고, 기업경영권은 북한측이 전담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유리
- 결국 나진-선봉 이외 지역에서 합영기업의 형태로 외국인들이 상주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받아들여려는 입장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의 설립절차를 달리하고 있음.

- 합영기업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 합작기업
 -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
- 외국인기업
 -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만 가능)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유형〉

구 분	투자 방식	경영 방식	분 배 방 식	
			이 익	손 실
합 영	공 동	공 동	공 동 (지분율)	공 동 (지분율)
합 작	공 동	단 독 (북한측)	공 동 (계 약)	단 독 (북한측)
외국인기업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단 독 (외국측)

3.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가. 투자당사자의 범위, 분야 및 우대 특혜조치

(1) 투자당사자의 범위

- 북한은 외국과의 합작 및 합영에 참가할 수 있는 북한측 투자당사자로서 합영법, 합영법시행규정 및 합작법, 합작법시행규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과거의 합영법 및 합영법 시행세칙에서는 투자당사자를 회사, 기업소로 한정하였다가 기관, 단체를 당사자로 추가했는데 특히 기관을 추가한 것은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적소유와 개인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개인은 투자당사자가 될 수 없음.
- 95년 2월 제정된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3조)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외국측 투자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가능성 문제는 ’92년 10월에 제정되고 ’99년 2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측 당사자로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 기업인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게 되어있음.
- 다만,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00.12.16)에서 서명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합의서」에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라고 규정
-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들은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중국이 대만동포 투자를 명시하고 법제화하여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투자당사자를 둘러싼 북한의 규정들은 상황 및 해석여하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 투자분야

-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가능 분야, 투자장려부문 및 동 부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투자금지 또는 제한대상을 총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도 각각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 외국인투자법규상의 가능분야, 장려 및 금지·제한 부문〉

구 분	가 능 분 야	장 려 부 문	금지 또는 제한부문
외 국 인 투 자 법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 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첨단기술 등 현대적 기술과 국제경쟁력 높은 제품생산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부문	민족경제발전과 국가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상 낙후되고 환경보호에 저촉되는 부문

구 분	가 능 분 야	장 려 부 문	금지 또는 제한부문
합 영 법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 등	첨단기술, 현대적 기술 도입 부문, 국제경쟁력 높은 제품생산 부문,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금지 :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 국가안전과 사회공동이익 저해 부문 제한 : 환경보호기준 저해 부문, 설비, 생산 공정 낙후 부문, 단순 자원수출 부문, 경제적 효과 적은 부문
합 작 법	수출제품 생산분야, 선진기술 도입·생산분야, 관광·서비스분야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 투자부문, 국제경쟁력 높은 생산 부문	규정 없음
외 국 인 기 업 법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식료가공, 피복가공, 일용품 공업 및 운수, 서비스분야 등	규정 없음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낙후된 부문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94. 3월 제정)에서는 제한·금지분야를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단독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합영이나 합작기업보다 엄격한 승인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외국인기업의 설립요건(다음 조건 중 한가지는 만족시켜야 함.)

- ①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함.
- ②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③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함.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분야

- ①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문
- ②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문
- ③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
- ④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은 부문
- ⑤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

는 부문

▶설립금지부문

- ① 출판, 보도, 방송 부문
- ② 체신 부문
- ③ 이밖에 국가가 금지한 부문

(3) 우대·특혜조치

- 외국인투자법에는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보장, 은행대부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첫째, 국가가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과세가 면제되며, 둘째, 생산부문에서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결산이윤의 14%가 적용되는 등의 특혜를 받음.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서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을 1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합영법에서도 장려부문과 해외조 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 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설립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합영 및 합작기업인 경우와 외국인기업인 경우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됨. 합영 및 합작기업의 경우 대체로 북한측 투자자가 맡아 하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직접할 수도 있고 경제무역지대의 해당기관 또는 투자자가 선택한 북한의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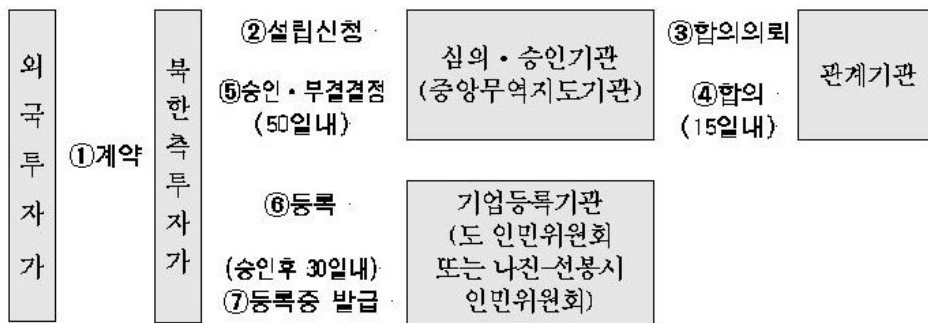
(1) 합영기업 및 합작기업

- 먼저 합영기업의 설립신청 절차의 경우, 외국기업과 합영을 하려는 북한측 투자자는 외국투자자와 계약서초안을 작성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함.
- 이후 북한투자자는 외국투자자와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합영기업 설립의 심사승인기관인 중앙무역 지도기관에 기업의 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타산서(Feasibility Study) 등을 첨부해 합영기업설 립신청서를 제출함.
- 제출시 모든 서류들은 조선어(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외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한글번역 문을 첨부해야 함.
- 관계기관은 합의의뢰서를 15일내에 검토하고 합의서를 심사승인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기간내 송부 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내에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합영기관 은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합영기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한 날이 기업설립일이 됨. 합영기업은 기업등록일로부터 20일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함.
- 한편 합영계약서 및 기업의 기본규약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합영계약서 및 기업 기본규약의 주요내용>

합 영 계 약 서	기 본 규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칭, 소재지 - 계약당사자명, 소재지 - 기업조직 목적과 업종, 경영범위와 규모, 존속기간 - 출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지분과 출자액, 출자명세, 출자기간, 출자지분의 양도 - 이사회조직, 운영 - 경영관리기구의 정원과 직능, 종업원수, 외국인종업원수, 노무관리 - 직업동맹조직 - 생산물의 처리, 설비, 원료, 자재구입, 기술이전 - 재정부기 및 의회이용 - 결산과 이윤분배, 기금조성 및 허용 <p>(이하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칭, 소재지 - 합영당사자명, 소재지 - 기업조직 목적과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존속기간 - 출투자액, 등록자본, 출자지분,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지분의 양도 - 이사회조직과 임무, 운영방식, 통지방법, 기업의 법정대표 -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원과 그 임무 - 재정부기, 노무관리 - 결산과 분배, 기금 - 해산과 청산 - 기타

<합영기업의 설립절차>



○합작기업의 설립절차는 합영기업의 경우와 비슷하며 북한측 투자자의 해당 상급기관과의 사전협의, ②외국투자자와 합작계약 체결, ③중앙무역지도기관에 합작신청서 제출(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 첨부), ④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⑤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등록(승인후 30일 이내)

(2) 외국인기업

○현재 북한은 외국인기업의 설립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허용

-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창설 신청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타산서(Feasibility Study),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려야 함. 설립이 승인되면 외국투자자는 30일 이내에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해야 하며 기업등록일이 외국인기업창설일이 됨. 그리고 기업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함.

다. 출 자

(1) 출자대상물 및 평가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 관련법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대상물로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토지이용권, 기술비결(know-how) 등 재산과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출자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출자물의 평가는 ‘투자자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하여 약간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 화폐재산 : 해당금액을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경우
 - ▶ 부동산 : 재산등록기관에 부동산 소유권이나 이용권 이전수속을 끝낸 경우
 - ▶ 부동산외의 현물재산 :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기업구내에 이전시킨 경우
 - ▶ 재산권 : 해당 소유권증서를 기업관할에 넘긴 경우

(2) 등록자본의 규모 및 출자기간

- 합영법시행규정에서는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즉 총투자액은 합영기업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이라는 것임.
- 한편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서는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의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중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북한은 등록자본의 규모를 총투자액 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해두고 외국인투자자가 정해진 등록자본의 투자를 일정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자본의 규모는 합영기업의 경우 총투자액 300만원까지는 70% 이상~총투자액 6,000만 1원 이상은 30% 이상이며,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총투자액 600만원까지는 65% 이상~총투자액 6,000만 1원 이상은 30% 이상임.

<등록자본의 규모>

구 분	총 투자액 규모	등록자본/총투자액(비율)
합 영 기 업	300만원까지	70% 이상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 1원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2,000만 1원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외국인기업	600만원까지	65% 이상
	6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까지	45% 이상
	*900만원까지	410만원
	2,000만원 이상부터 6,000만원까지	35% 이상
	*2,700만원까지	950만원
	6,000만 1원 이상	30% 이상
	*7,700만원까지	2,600만원

※ 금액은 북한원화

- 한편 등록자본은 증자시킬 수는 있으나 감자시킬 수는 없음. 등록자본을 증자할 경우에는 기업창설 승인기관과 합의하고 합의가 되면 기업등록기관에 등록자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함.
- 합병법과 외국인기업법은 합병당사자 및 외국인투자가가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출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 인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합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등록자본의 출자기간은 출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함.
 - 합병기업은 출자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경우 첫 번째 출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출자액의 15%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출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함.
 - 외국인기업 투자가는 투자를 여러번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하여야 하고 첫 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 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설립승인서 및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됨.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가. 경영관리조직

- 합병기업의 주요한 경영관리조직으로는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관리기구 및 재정검열원이 있음.
-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단독으로 경영하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측이 100% 단독 투자하여 단독경 영을 하는 관계로 해당 법규에서 경영조직에 대한 규정을 거의 두고 있지 않음.

(1) 이사회

○합영법 및 시행규정에 의하면 합영기업의 최고의결기관은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며, 이사의 구성, 회의 및 임무 등은 다음과 같음.

- 구 성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2명과 이사들
(부이사장과 이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결정)
- 임 기 :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 4년
- 임명방법 :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선출
- 이 사 장 : 합영기업의 법정대표
- 부이사장 : 이사장 사업 보조, 이사장 결원이나 1개월 이상 없을 경우 대리
- 회 의 : 정기회의(연1회 이상)와 임시회의(필요시 소집)가 있음.
회의는 전체 이사 2/3 이상 참가시 성립
- 임 무 : 기업의 중요문제 토의 결정
(기본규약 수정보충, 기업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등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 증자, 출자지분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 변경, 존속기간연장, 해산, 청산 위원회 조직 등)

○이사회는 통상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안건을 채택하나 기본규약 수정보충, 출자지분 양도, 존속기간 연장, 기업해산 등에 대한 결정은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함.

○한편, 합작법에 의하면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하여 동 기구에서 신기술도입과 제품품질 제고, 재투자 등 합작경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경영관리기구

○합영기업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관리기구를 두며 경영관리기구의 구성은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및 필요한 관리성원으로 구성된다고 합영법시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기업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나누어 맡음.

○기업책임자는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을 행사하며 기본규약, 이사의 결정에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고 경영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지게됨. 기업책임자는 이사회 성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

(3)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은 재정검열원을 두며 합영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재정검열원들로 구성되는 재정검열 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정검열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열원의 임무는 첫째, 합영기업의 경영활동을 일상적으로 검열하고, 둘째, 이사회 회의에 제출되는 재정부기서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임. 재정검열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재정검열원은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음.

○재정검열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재임가능하며 경영관리성원은 재정검열원이 될 수 없음.

나. 구입·판매 및 수출입

○합영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북

한내에서 판매할 수 있고 필요한 물자의 수입 및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만큼 북한내 구매 및 판매와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의 연간경제 계획과 연계를 가져야 하며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하는 것임.

(1) 북한내 구입 및 판매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북한내에 판매할 수 있음. 이 경우 정해진 기간내 해당기관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수공급계약을 맺어야 함.
- 수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명,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대상, 수량과 질 및 기술적 요구, 가격 및 지불조건, 계약이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 등이 있음.
- 또한 합영기업은 경영용 물자를 북한 상업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국가가 정해준 기관, 기업소에 북한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음. 이 때 받은 북한원은 노임, 대외 사업비, 세금, 사용료 등으로 사용가능함.
- 외국인기업의 북한내 구입, 판매도 합영기업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나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인기업의 북한내 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첫째, 나진-선봉경제무역 지대내 판매의 경우 상품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밖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가격과 지역내 일부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함.

(2) 수출입

-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입승인신청을 받은 해당기관은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3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 30일)내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 결정을 내려야 함. 다만 기술을 수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편,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물자의 수입을 북한의 해당무역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 합영기업의 생산용 물자, 생산제품, 기술의 수출입가격(기술봉사요금 포함)은 해당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함. 외국인기업의 경우도 합영기업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기업이 투자몫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5.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북한은 '93년 12월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 '99. 5월 개정하였으며 동규정은 북한내의 외국인투자기업(합작, 합영 및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음.

가. 채용 및 해고

-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외국인을 관리인이나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면 중앙무역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자체로 정하며 노동알선기관과 채용계약을 맺어야 함. 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노동력으로 충당하며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력으로 보충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이 알선기관 또는 주무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계약에 의해 종업원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은 채용단계에서 노동력의 질을 선별 채용하는 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업동맹, 해당 노동알선기관과 합의후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음.

①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다른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업의 경영조건과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③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노동력을 축소하거나 기업해산을 선포한 경우

④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노동규율을 심히 어긴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직업동맹조직, 해당 알선기관과 합의 없이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노동과정에서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와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② 여성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 휴가, 수유기에 있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할 수 있음.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

② 전공이 맞지 않거나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③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해고 및 사직시 1개월전에 해당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노동알선기관에 명단을 제출해야 함. 외국투자기업은 해고 또는 사직(개인사정의 경우는 제외)하는 종업원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함.

- 근무연한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노임액과 일한 년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함.

나. 노동시간

○외국투자기업 종업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주노동일수는 6일, 주노동시간은 48시간임.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짧게 할 수 있음.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특히 폭행, 협박, 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외 노동을 강요할 수 없음. 그러나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동맹과 합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킬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명절과 공휴일에 휴식을 주고 정기 및 보충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함. 또한 매년 관혼상제를 위한 특별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왕복여행일수는 포함되지 않음.

다.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외국투자기업은 중앙노동기관이 정한 월노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노임기준, 노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함.

○기본노임외에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보조금, 휴일 및 야근시 가급금 및 휴가비 등에 대한 규정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휴업보조금 :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직업훈련)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함.

즉, 휴업보조금=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60%

▶ 휴일 및 야근시 가급금 :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노동시간외 연장작업, 야근을 한 종업원에게 노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함. 한편 명절과 밤 노동시간 밖(22시부터 다음날 6시)의 밤연장작업을 한 경우에는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함.

▶ 휴가비 : 휴가 및 보충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함.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노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 동안의 노동보수 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노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휴가기간의 노동보수액 계산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됨.

○외국투자기업은 노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짜를 정하고 매달 날짜를 지켜야 함.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노동보수를 주어야 함.

라. 사회보험·사회보장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종업원들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사회보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과 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연금은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에게 보조금과 연금을 지불하는 절차

-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 확인을 받고 은행기관에서 해당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노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함.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 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지급하고 후에 청산받아야 함.

-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서류를 내어 수속한 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매월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함. 사회보험기금은 외국투자기업과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됨.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음.

6.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관리

가. 개 관

- 외환관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단편적으로 다루다가 '93년 1월 외화 관리법이 제정되고 '99년 2월에 개정, '94년 6월에 외화관리법시행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함.
- 북한이 규정하는 외화에는 ①전환성 외국화폐, ②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 등 외화유가증권, ③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외화지불수단, ④기타 외화자금, ⑤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등 귀금속이 속해 있음.
- 현재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전환성외화로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독일 마르크,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캐나다 달러, 오스트리아 쉐링, 호주 달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은 무역은행 등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북한내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외화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의 외환관리수단으로는 ①북한내 외화현금 유통금지, ②외화거래, 저금, 예금, 저당의 외국환업무 관련은행 한정, ③외화관리기관의 환율 책정, ④외화관리기관의 결제통화 지정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내에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은행은 무역은행이며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 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들 통화와 북한원간의 환율은 다음과 같음.

〈주요국통화와 북한원화의 환율〉

(2000. 2.11 기준)

국명	단위	2000년(2.11)		1999년(1.19)	
		은행권 대입	은행권 대도	은행권 대입	은행권 대도
U.S.A	1 USD	2.13	2.2259	2.120	2.2154
EU	1 EUR	2.0999	2.1839	2.4409	2.5385
U. Kingdom	1 GBP	3.4163	3.5530	3.4760	3.6150
Germany	1 DEM	1.0792	1.1223	1.2544	1.3046
Japan	1 JPY	0.0195	0.0202	0.0185	0.0193
Switzerland	1 CHF	1.3052	1.3574	1.5273	1.5884
France	1 FRF	0.3201	0.3329	0.3721	0.3870
Hong Kong	1 HKD	0.2753	0.2845	0.2732	0.2842
Australia	1 ATS	0.1526	0.1587	0.1774	0.1845
Singapore	1 SGD	1.2519	1.3020	1.2566	1.3068
Canada	1 CAD	1.4653	1.5239	1.3796	1.4348
Netherlands	1 NLG	1.9529	1.9910	1.1076	1.1519
Sweden	1 SEK	0.2481	0.2580	0.2631	0.2736
China	1 RMB	0.2351	0.2445	-	-

나. 외
화의
이용
○외화
는무
역차

- 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무역의 거래, 은행에서의 북한원 매매거래, 자본거래에 이용할 수 있음.
- 북한은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방법으로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 등을 들고 있음.
- 북한내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으며 외화는 은행계좌에 넣고 사용해야 하고,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원과 교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고려호텔 등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숙박시설, 상점 등에서는 달러가 유통되고 있음.
- 북한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 무역은행에, 또는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하에 다른 은행에 북한원 계좌, 외환원 계좌,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함.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하에 외국에 있는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북한원 계좌는 북한내에서 경제활동 등 여러 활동으로 합법적으로 얻은 북한원을 입금시키며 이를 외화로 전환시킬 수 없고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함. 외환원 계좌에는 외화와 바꾼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는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시킬 수 있음. 외화 계좌에는 외화를 그대로 입금하며 계좌는 화폐별로 개설할 수 있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원 계좌에는 북한내에서 얻은 북한원을 입금하며 이를 외화로는 전환시킬 수 없다는 규정인데, 내수판매로 얻은 북한원 이윤은 외화로의 태환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분기 및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 북한 외화관리기관의 강한 통제를 받게됨을 알 수 있음.

다. 외화의 반출입

- 북한은 외화관리법에서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들여올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외화의 반입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외화를 반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통제가 따름. 외화현금의 경우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서류나 입국시에 세관신고서상에 밝힌 금액내에서만 반출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고(입국시 세관에 신고했을 경우 승인 불필요),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으며 입국시 들여온 귀금속은 세관 신고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음. 단,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 서류나 세관신고서 없이 반출할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외국투자기업 및 동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송금, 이전 또는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즉, 외국투자기업은 국외로 기업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 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의 60%까지 국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는 것임.
- 국외송금 보장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첫째, 외국투자기업의 북한원화 수입은 외화로 태환할 수 없는 관계로 외화이윤이 아니면 사실상 송금이 불가능하며, 둘째, 북한의 외환사정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경우 외화예금에 대한 인출정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7.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관리

가. 개 관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토지국유화제도를 취해오고 있음. '90년대 들어 외국자본유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92년 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99.2.26 개정)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토지임대를 처음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정을 차례로 제정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임대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였음.
- 북한의 토지임대법에는 외국법인과 개인이 북한토지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음.
- 토지의 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지며 이는 임차자의 재산권이 됨. 단, 임대한 토지에 속한 천연자원과 광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토지임대와 관련된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하에 시행하며, 토지임대차계약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나진-선봉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와 맺음.
- 토지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장 50년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함.

나. 토지의 임대방법

-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하며,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협상, 입찰, 경매에 관한 각각의 절차는 토지임대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함.
-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함.

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 북한은 토지임차자의 토지이용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임차자가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됨.
-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음.

-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나와 있는 투자분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음.
-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차물들도 함께 양도됨.
-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임차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차물도 함께 저당됨.
- 토지이용권의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부속 건축물과 기타 부차물을 처분할 수 있음.

라. 토지임대료

- 토지임대법은 토지임차자가 임대한 기관에 납부해야 할 비용으로 토지이용권을 넘겨주는 값과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 들고 있음.
-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함.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2천만원 이상인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하에 5년 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한편,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체결일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함.
- 한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임대받을 수 있으며 위탁건설도 할 수 있음.
- 임차한 토지 안에 있는 건물을 임대받는 경우에 토지임대와 함께 건물임대료도 동시에 납부해야 함.
- 토지이용자는 소재지 재정기관에 해마다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 납부해야 함.
-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데 토지를 사용하는 값은 4년 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장려부문과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값을 10년까지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음.

마. 토지이용권의 반환과 연장

-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차물도 무상으로 반환됨.
- 토지를 40년 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줌.
-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임대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함.
- 북한은 토지이용권의 연장도 허용하고 있는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6개월 전에 임대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함.
- 토지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으며 토지임대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며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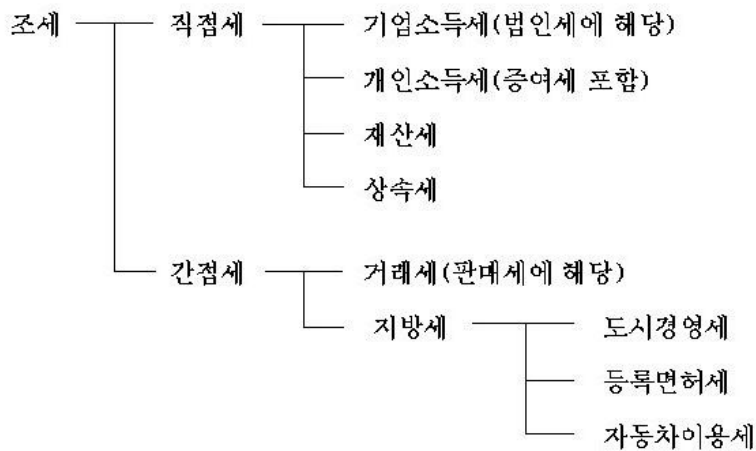
해당한 보상을 하여줌.

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가. 개 관

○북한은 '93년 1월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이하 '외국인세금법')을 제정('99년 2월에 개정)하고, '94년 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세제를 재정비하였음.

〈외국투자가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



○외국인세금법의 특징은 첫째, 중국의 관련세제를 대폭 수용하여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외에도 거래세, 재산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지난 '93년 1월 동 법을 제정

하면서 세제를 현실화하여 외국인이 북한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 인상시키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구체적인 세율을 법에 명시한 바 있으나, '99년 2월 동 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내각이 정한 세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음.

○마지막으로 북한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사유재산소유(건물, 선박, 비행기, 차량)를 허용하고, 경제무역지대내에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세금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법인세에 해당),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간접세로 일종의 판매세)가 있으며 그 밖에 지방세가 부과됨.

○외국투자가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기업소득세율〉

과 세 대 상	세율(%)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	25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	14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결산이윤	10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소득	20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의 기타소득	10

○ 외국
투자
기업
의
재정

※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은 첨단기술 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임.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야 함.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세금은 북한원화로 계산하여 자진 납부하거나 또는 기업이 공제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납부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으로 함.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세금과 관련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외국인세금법」에 우선하여 그 협정을 적용함.

나. 기업소득세

(1) 과세대상, 세율 및 납부

○북한에서 기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은 ①북한내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이하 사업소득으로 약칭, 사업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은 기타 소득임), 이자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know-how), 경영관련 봉사소득, 폐설물 및 부산물처리에 의한 소득 등 기타 소득과 ②북한 밖의 지사, 출장소, 자회사 등에서 얻은 소득으로 대별됨.

○기업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에 대해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세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 기업소득세납부서와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한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회사가 공제납부함.

(2) 기업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북한은 장려부문 및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표와 같이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음.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재정기관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구 분	조 건	감 면
① 차관, 대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정부와 은행에 대한 차관제공 - 외국은행이 북한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이자율, 상환기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	-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② 장려부문 및 경제무역지대	- 10년 이상 운영 - 10년 전에 철수, 해산할 경우 감면받은 소득세액 반납	- 이윤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면제 - 그후 2년간 50% 범위 감면
③ 경제무역지대 서비스부문	- 10년 이상 운영	- 이윤발생년도로부터 1년간 면제 - 그후 2년간 50% 범위 감면
④ 하부구조 건설부문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북한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의 하부구조건설 부문	- 이윤발생년도로부터 4년간 면제 - 그후 3년간 50% 범위 감면
⑤ 기업이윤의 재투자	- 5년이상 운영 - 5년이전에 재투자분 철수할 경우 반환받은 세액 환급	-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기납부한 재투자분의 세액 전부, 기타부문은 50% 환급

다. 개인소득세의 (1) 개인소득의과세대상을
○ 북한에

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의 소득에 대하여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근로소득, ②배당소득, ③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know-how),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이자소득, ⑤임대소득, ⑥재산판매소득, ⑦증여소득, ⑧개인기업소득 등이 포함됨.
-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근로소득 1,000원이며, 그 이상일 경우 내각이 정한 세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know-how),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임. 이자소득세는 은행예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인건비, 포장비, 수수료 등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함.
- 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증여소득 1만원 이하의 면제이고 1만원을 초과할 때는 내각이 정한 세율에 따름.

(2) 개인소득세의 납부

- 노동보수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회사)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함.
- 수익인이 북한 밖에 있으면서 북한내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10일 안으로 소득지불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북한내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함.

라. 기타 세제

(1) 재산세

- 외국인은 북한내에서 소유하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진-선봉경계무역지대에서는 외국인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 또는 건설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함.
- 외국인은 재산을 북한내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내에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대상액은 재정기관에 등록된 가격으로 함.
- 재산세의 세율은 내각이 정함.

(2) 상속세

- 북한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에 적용되며 북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함.
-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북한 밖의 재산상속에도 과세한다는 조항이며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받은 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함.
- 상속세의 세율은 내각이 정함.

(3) 거래세

- 생산물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거래세의 과세

대상액은 ①생산부문은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의 북한내 판매 수입금, ②상업부문은 상품판매액, ③ 교통운수, 금융, 관광 등 서비스부문의 서비스 수입금임.

○거래세의 세율은 내각이 정함. 다만,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내의 서비스 수입금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줌.

(4) 지방세

○도시경영세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함.

-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임금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함.

-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 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 납부함.

○자동차이용세 :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함.

- 세율은 내각이 정함.

9.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

○북한의 회계제도는 회계원칙 및 기준이 정비되지 않아서 매우 불투명한 점들이 많음.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에 외국인기업의 경영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년 12월에 외국인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을 제정하였음.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기업을 설립한 해의 결산연도는 설립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을 해산한 해의 결산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해산일까지로 규정 되어 있음.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분기결산서는 분기 종료후 다음달 15 일내에, 연간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기업설립승인기관과 재정기관 등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함.

○연간결산방법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 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것으로 함.

-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함.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를 적립해야 하며, 이는 합영기업의 결산을 매꾸거나 등록자본을 증자하는 데에만 사용이 가능함.

- 기타 필요한 기금으로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 상금을 위한 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 기금 등이 있으며, 이의 적립한도는 결산이윤의 10%이며 기금의 종류,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 사회에서 토의 결정함.

○외국인기업의 결산절차 및 방법 역시 합영기업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외국인기업이 100% 단독투자 라는 점에서 이윤분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기업은 예비기금 이외의 필요기금의 적립한도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10.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 및 분쟁해결

가. 해 산

- 외국인투자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 자연재해와 같은 사정
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됨.
- 합영기업의 경우, 존속기간은 합영계약에 정한대로 하고 존속기간의 계산은 기업등록일부터 계산하
며,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종료 6개월전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합 영 기 업	외 국 인 기 업
1.채 관소가 기업의 파산을 선고하였 을 경우 2.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경우 3.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이행 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어 기업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4.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 로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이사회에서 기업해산을 결정하였 을 경우 6.기업설립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 소되었을 경우	1.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 유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3.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 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외국인기업설립승인과 기업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5.채 관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 포되었을 경우

※ 합작기업의 해산사유 : ① 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기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②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③ 기업
이 파산되었거나 합작승인 또는 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 외

국인투자기업이 해산을 하는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며 해산 승인 이후 청산위
원회를 조직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감.

나. 분쟁해결

-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모두가 의견의 충돌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한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합영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
음.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 양식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	-----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전화 :)			
	직 업	(전화 :)			
② 피 접촉 예정인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및지위	신청인과의 관 계
③ 접촉목적					
④ 접촉경위					
⑤ 접촉일정 및 장소					
⑥ 접촉방법					
⑦ 접촉경험 (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청하며, 북한주민과의 접촉중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여권사진 2매)
2.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 음

11022-00911면 210mm×297mm

90.10.12승인

인쇄용지(특급)80g/m²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방문지				
② 연장기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개월)]		
③ 연장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 음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 - 신고년도(마지막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예 : 주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 _____ 신고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신 청 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사 진
	생 년 월 일				(반명합판)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3cm×4cm
	직 업	전화번호			
②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③방 문 경 위 (입북비자획득등)					
④방 문 목 적 (사 유)					
⑤방 문 기 간 (일 정)					
⑥방 문 경 로 (경 유 지 포 함)					
⑦여 행 지 내 연 고 자 또 는 접 촉 인 물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 고 인 : _____ (인)(또는 서명)

대 사(총 영 사) 귀하

11313-02711민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보 고 인	①단 체 명 (상 호)		②협 력 사 업 자 승 인 번 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⑦사 업 명			
	⑧승 인 (변 경) 일 자		⑨승 인 번 호	
보 고 사 유				

보 고 개 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보고개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		②설 립 년 월 일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전화번호 :)		
사무소 설치 내역	⑥업 종			
	⑦설 치 목 적			
	⑧사 무 소 명	(국문) (영문)		
	⑨대 표 자 성 명		⑩주 민 등 록 번 호	
	⑪소 재 지			
	⑫업 무 개 시 예 정 일	년 월 일		
	⑬주 재 원 수	본사과건 : 명		현지고용 : 명
	⑭영 위 업 종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통 일 부 장 관 귀 하</p> <p><첨부서류> :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경비조달계획서 및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수수료
				없 음

사무소설치승인증

①상 호		②대 표 자 성 명	
③업 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소 설치를 승인합니다.

⑥설 치 목 적		⑦승 인 번 호	
⑧사 무 소 명	(국문) (영문)	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⑩소 재 지			
⑪주 재 원 수	본사파견: 현지고용:	⑫활 동 내 용	
⑬상 주 기 간	년 (년 월 일까지)	⑭승 인 일	년 월 일
⑮승 인 조 건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사무소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①상 호		②설 립 년 월 일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⑥사 무 소 명				
	⑦소 재 지				
	⑧업 종				
⑨폐 지 사 유					
⑩폐 지 시 기		년 월 일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통 일 부 장 관 귀 하</p> <p><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p>					
				수수료	
				없 음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 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증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 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 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회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회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회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회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회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회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회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회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분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와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 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

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칩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 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 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의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 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1999. 5. 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예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 (이하 “협력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예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 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①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시방북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9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다. 생산 및 판매계획

라. 조직 및 인력계획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 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다. 출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 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계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 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조(사무소의 설치 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 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은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승인 처리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 등) ①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 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 6. 28 재정경제부고시 제95-23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정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5조(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6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7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8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투자금의 송금 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금 등의 회수) ①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11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북투자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북 한 지 사

제14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15조(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

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20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채원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북한지사의 폐지 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 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25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지침 제13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5. 24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 93.12.31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

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기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93.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경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 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 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 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원고시 제91-1호
개정 1998. 5. 12 통일원고시 제98-1호
1998. 12. 31 통일부고시 제98-4호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

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8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 상 지 원

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 화 · 학 술 · 체 육 협 력 지 원 자 금

-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2조 <삭 제>
-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 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 원화로 한다.
-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 실 보 조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 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할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 제>

제34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 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 <삭 제>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 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 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7조 <삭 제>

제48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1조 <삭 제>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 대출 등

제53조(반출·반입자금 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삭 제>

제54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 무 보 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된 손실 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 취급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원

2. 남북간만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할 수 있다.

제65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67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1999. 10. 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를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② 반출·반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에 따라 교역을 진행중인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 직전년도에 물품 반출 또는 반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우선지원대상)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흥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7.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나. 대외무역법
 - 다. 관세법
 - 라. 외국환거래법
 -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별표 1]에서 정한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만,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2 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6조(대출비율) 경제협력사업자금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자기자금이나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제8조(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9조(회수통화등) 대출금 및 이자는 당해 대출표시통화로 받는다.

제10조(이자율 및 이자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③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이자는 매 6월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선취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상환방법) 대출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13조(담보) ①채권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필요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4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15조(대출비용) ①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은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소요비용에 있어서 계약재배에 의한 농작물 반입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을 포함한다.

제16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③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이자는 매1월 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기간) ①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8조(상환방법)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20조(대출비용) ①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소요비용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3. 유희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제21조(대출기간) ①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내에서 최종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내에서 최종 설비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설비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당사자간의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상환방법)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3 장 보 칙

제24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비율,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생략>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 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관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중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표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북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대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

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 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 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 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경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을 대표하여 북 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장사 전금진

부 록

정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보장(제목)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자산
지분	출자분
의정권	공동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대환성통화	신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 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권한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법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건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

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

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 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은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장사 전금진

부 록

방문의 합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관점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유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채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검함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수익적 소유자	수익자
국제	경부유가증권
사용료	지적소유권사용료
대가	요금
독립적 인적용역	전문봉사활동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법률훈, 공학가, 부기원
급여	모임
지급받은 보수	모종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취인	수납인
귀속	이전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사업
지배	관리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 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

계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 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을 대표하여 북 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장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중재판정	재결
중재인	재결원
의장중재인	책임재결원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법령	법
활동 보장	사업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구상하다	내오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서명	수표
문본	문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동일부장관 박재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장사 전금진

부 록

양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역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리화	미달라
청산결제주기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북한과의 합영계획서 등의 모델

계약서류의 종류와 효과

- 북한과의 합영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합영계약교섭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조인하기까지 「의향서」, 「협약서」 등의 문서가 교환됨.
- 의향서, 협약서 양 서류는 모두 파트너 쌍방이 서명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가까운 장래에 「의향서」, 「협약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1) 의향서

- 의향서는 「甲과 乙이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방향에 상호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님.
- － 「의향서」가 작성되어도 그 후 사정이 변하거나 다른 파트너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전의 파트너에게 통보하면 되며 영문으로는 LOI(Letter of Intent)로 표기.

(2) 협약서

- 「협약서」는 「의향서」보다 한단계 발전된 문서임. 기재내용이 「의향서」보다는 구체적으로 되며 「계약서」의 토대가 됨.
- 협약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가능.
- － 그러나 협약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왔다면 상호간 파트너로서 지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본을 통상 4부 또는 그 이상 작성하며, 합영당사자가 각각 1부를 소지하고, 합영기업의 인가기관인 북한의 중앙무역지도기관, 남한의 통일부에 원본 1부씩을 제출용으로 보관함.
- － 협약서의 백지철회는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여짐.
- 그러나 다음 단계의 F.S(기업화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약서」에 정한 각종 조건을 변경하는 것, 예를 들면 합영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것, 토지임대료를 연간 평당 30원에서 25원으로 하는 것 등은 변경이 가능함. 영문으로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표기함.

의향서 샘플

○A사(이하 “갑” 이라고 함)와 B사(이하 “을” 이라고 함)는 ○○(상품명)의 생산에 관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토론한 결과 200×년 ×월 ×일 ×(도시명)에서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다 음 -

1. 쌍방은 합영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쌍방이 F.S(기업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2. 기업화조사항목은 갑이 제공하며 그 소요비용은 갑이 ○○%, 을이 ○○%를 분담한다.
3. 기업설립장소 : 잠정적으로 한다.
4. 합영기간 : 잠정적으로 ○○년으로 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연기하도록 한다.
5. 생산품목 및 수량 : 본기업은 생산품목 ○○를 연 ○○개 생산한다.
6. 투자총액 : ○○만원, 토지면적 ○○Mt, 종업원 ○○명, 연 총생산액 ○○만원
7. 투자방법과 투자비율에 관하여
8. 설비, 기술의 도입에 관하여
9.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10. 원재료의 조달에 관하여
11. 이익의 손익배분은 투자비율에 의한다.
12. 본 의향서는 ○○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장 소 :

갑을 대표하여

을을 대표하여

협약서 샘플

갑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와 을총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는 ○○생산과 관련 합영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기업명칭은 ○○회사로 한다.
당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등기등록을 한다.
3. 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4. 제품판매에 관한 사항
5. 당 합영기업의 투자총액은 ○○로 한다.
가.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로 하고, 갑의 출자액은 ○○으로 하고 등록자본총액의 ○○%로 한다.(출자금액의 일부를 건물, 설비 등으로 충당한다.)
을의 출자액은 ○○으로 하고 등록자본총액의 ○○%로 한다.
6. 당 합영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제외한 유동자금 등 필요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다.
7. 공장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공장소재지는 ○○로 하고 부지면적은 ○○㎡로 건물면적은 ○○㎡로 한다.
갑은 관계토지관리부문 등에 자문을 받아 토지사용료를 ○○로 한다.
8.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9. 당 합영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인 이사회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명, 이사 ○○명, 총 ○○으로 구성된다.
10. 종업원을 ○○명으로 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을 ○○로 하고, 이 가운데 ○○%를 복리비로 한다.
11. 기업 유보기금에 대한 사항(비율, 용도 등)
12. 갑, 을 쌍방은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결손을 부담한다.
13. 합영기간은 기업등록증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년으로 한다. 출자자 쌍방의 합의와 관계인가기관의 비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4.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혹은 그 실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을 쌍방은 협의로 해결한다.
15. 본 협약서는 조선어로 각 ○○통을 작성하고 쌍방은 각 ○○통을 보유한다. 협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년 월 일

갑 : 대표자 서명

을 : 대표자 서명

계약서 샘플

제 1 장 총 칙

대한민국 ○○주식회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는 양국간의 경영기술협력관계 강화와 무역확대를 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기초, 호혜평등의 정신을 기초하여 우호적 협의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XX 시에 공동출자로 합영기업을 설립할 것을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장 합영당사자

제1조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명 :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

등기기관 :

법정소재지 :

법정대표자 :

나. 기업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이하 “을” 이라 칭함)

등기기관 :

법정소재지 :

법정대표자 :

제 3 장 합영기업의 설립

제2조 갑, 을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기타 공화국의 관계법규에 기초, 공화국의 ○○시에 ○○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칭함)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3조 합영기업의 명칭은 ○○으로 한다. 영문명칭은 ○○Co. Ltd로 한다.

합영기업의 법정소재지는 ○○시이다.

단, 합영기업은 업무 발전과 필요에 따라 공화국 관련기관의 허가를 얻어 공화국 기타 지역 또는 국외에서 지점, 자회사, 사무소 및 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법률에 기초해서 설립한 공화국법인으로 공화국내에서의 활동은 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제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특전을 향유한다.

합영기업은 독립재산, 독립경영을 실행하고 제3자에 따른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그 소유하는 일체 자산에 대해서 스스로 지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합영기업의 조직형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에 정한 유한책임회사이다.

갑, 을 쌍방은 등록자본 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각기 출자액을 한도로 해서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 장 경영의 목적, 범위, 규모

제6조 갑, 을 쌍방이 설립한 합영기업 경영의 목적은 남, 북 양측의 경영기술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 경영관리의 수법을 채택, 선진기술과 설비도입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출자자 쌍방이 만족하는 경영수익을 높이는데 있다.

주) 구체적 상황에 기초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7조 합영기업의 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

나. ○○

다. ○○

라. 약의 각항에 따른 업무

제8조 합병기업의 경영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제품은 ○○년 ○○월부터 당장 ○○개를 생산목표로 한다.

나. 국내외의 시장 추이에 따라 이사회는 협의 결정에 따라 생산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합병기업의 제품은 공화국 국내, 국외 시장에서 판매한다.

주) 북한 내·외에서의 판매방법, 분담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제 5 장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제10조 합병기업의 총투자액은 조선원 ○○원(또는 쌍방이 협의, 결정한 외화)로 한다.

제11조 갑, 을 쌍방의 출자액은 조선원 ○○원으로 이것을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으로 한다. 이 중에 갑은 ○○원, ○○%를 점하고 을은 ○○원, ○○%를 점한다.

제12조 갑, 을 쌍방은 제11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한다.

갑 : 현 금 ○○원

토지사용권 ○○원

기계설비 ○○원

공업소유권 ○○원

기 타 ○○원

합 계 ○○원

을 : 공장건물 ○○원

기계설비 ○○원

기 타 ○○원

합 계 ○○원

제13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기로 나눠 불입하도록 하고 매 기 불입액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갑, 을 어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자기의 출자액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인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자자의 어느 일방이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이 우선적으로 매수권을 갖는다.

출자자의 어느 일방이 제3자에 출자액을 양도할시의 조건은 출자자의 다른 일방에 양도할시의 조건보다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갑, 을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출자액의 전부를 양도할시는 본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의무는 그 출자액을 양도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관련규정을 변경한다.

제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각 당사자는 각각 제12조에 정한 출자비율에 기초하여 증가등록자본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각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증가등록자본을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자자의 다른 일방이 증가등록자본총액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사회는 동의를 얻어 본래의 인가기관에 신청하고 그 심사기관이 지시한 등기기관에 변경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16조 갑, 을 쌍방은 불입을 하기로 한 출자액에 대해서는 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6 장 자금차입 및 변제

제17조 합병기업은 합병기업의 총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을 뺀 나머지의 소요자금 ○○원(이하 “차입금”이라 칭함) 및 기타 경영운전자금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합병기업이 스스로 차입하는 것으로 한다.

주) 구체적 상황에 기초 차입금의 조달선, 이율, 담보와 반제 등의 제 조건을 명기할 것.

제 7 장 합병당사자의 의무

제18조 갑, 을 쌍방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본 계약의 원활한 집행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갑 : ① 제12조에 규정하는 출자에 대한 사항 : 현금,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기타 제공
② 합영기업의 운영, 생산에 필요한 건물, 구축물의 레이아웃 및 기계설비의 배치안 제공
③ 합영기업이 위탁한 국외에서의 기계, 설비, 부품, 원재료의 조달 등 관련사항의 처리
④ 기계설비, 시운전 및 제도가공표준,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 ⑤ 갑이 파견한 관리, 기술자 및 일반종업원의 양성, 지도 ⑥ 합영기업이 위탁하는 갑이 분담해야 하는 사항

- 을 : ① 제12조에 규정하는 출자에 대한 사항 : 현금, 기계설비, 공장건물, 토지사용권, 기타 제공
② 합영기업 설립에 대해서 북조선관련주관부문에 대한 허가신청, 설립등기, 영업허가 취득관련 수속
③ 토지주관부문에 대해 합영기업사용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에 관한 교섭, 수속
④ 합영기업 소요건물, 구축물 등의 공사청부부문의 알선 및 교섭
⑤ 갑이 출자한 기계설비에 관한 수입통관수속 및 공장건물소재지로의 운반 관련 협력
⑥ 공화국내에서 조달하는 합영기업 소요의 기계설비, 원재료, 운반기계 등에 관한 기타 경제조직과의 교섭에 관한 협력
⑦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관련 기초시설을 확보하는데 협력
⑧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화국측 경영관리자, 기술자 추천 및 일반종업원 모집에 대한 협력
⑨ 외국적의 합영기업 및 관련인원의 입국수속 및 집무, 생활전반에 관한 수배, 알선
⑩ 합영기업이 위탁하는 을이 분담해야 하는 사항

제 8 장 기술이전 및 상표사용

제19조 갑, 을 쌍방은 갑이 합영기업에 대해 본 계약 제4장에서 규정한 제품품질, 생산규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에 관한 이전을 별첨과 같이 계약하는데 동의한다.

제20조 갑, 을 쌍방은 합영회사와 같이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 기타 필요한 조항은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기입한다.

제 9 장 원재료 · 부품조달 및 제품판매

제21조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부품조달은 원재료, 부품조달계획에 따라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의 제품은 공화국 국내외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국내판매부분을 ○○%, 국외수출분을 ○○%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니면 전량을 국외수출한다.

주) 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갑이 받아야 하는 이익을 해외송금하기 위한 외화보증에 관한 조치를 명기할 것. 국내 판매, 수출 등에 대해서 분담을 결정한다.

제 10 장 이 사 회

제23조 합영기업의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합영기업의 이사회를 설립한다.

제24조 이사회는 ○○명의 이사에 따라 구성되며 이 중에 갑은 ○○명, 을은 ○○명을 임명, 파견한다. 이사장은 갑(혹은 을)측에서 임명파견, 부이사장은 을(혹은 갑)측에서 임명파견된다.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파견측이 계속해서 파견한다면 유임할 수 있다. 어느 한편이 이사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교체 30일전에 서면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조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합영기업에 관한 모든 중대문제를 결정한다.

이사장은 합영회사의 법정대표다. 이사장이 사고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의하는 기타 이사에게 임시로 대표권을 줄 수가 있다.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의 출석으로써 성립된다.

제26조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1/3 이상 이사의 제안이 있으면 이사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또한 임시이사회 개최통지에 즈음해서는 의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 의 사록은 조선어로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 전원이 서명한 후 합병기업이 해산시까지 보관하고 동시에 그 사본을 갑, 을 쌍방에 송부한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합병기업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주 : 개최비용부담에 대해서 결정한 다)만약, 갑, 을 쌍방이 동의한다면 기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원 일치(또는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의 ○명 이상, 또는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 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 합병회사의 정관 개정
- ② 합병회사의 중지, 해산
- ③ 합병회사의 등록자본의 증자, 양도
- ④ 합병회사와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병
- ⑤ 공화국 국외에서의 지점, 자회사, 관계회사, 사무소 또는 대리기관의 설치 및 폐지
- ⑥ 합병회사의 자산 전부 또는 중요 자산 일부 양도
- ⑦ 기타 경제조직의 중요자산의 양수

제28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2/3(또는 과반수, 또는 출석한 이사 및 대리인의 ○명) 이상 이사의 찬성에 따라 결 정된다.

- ① 연도생산계획, 판매계획, 발전계획 결정
- ② 연도재무예산, 결산, 회계보고 승인
- ③ 연도 이익처분 또는 손실처리방법 결정
- ④ 회계처리규칙 및 변경
- ⑤ 조직, 기구 결정 및 변경
- ⑥ 총사장의 연도경영보고의 심사 및 승인
- ⑦ 종업원의 임금, 복리, 대우 등 노동관리에 관한 규정 결정
- ⑧ 총사장, 부총사장 및 기타 고급관리자의 임면 및 내부 또는 외부감사인의 임면
- ⑨ 이사에 의해 제출된 의안의 심의 및 결의
- ⑩ 기타 중요사항의 결정

제 11 장 경영관리기구

제29조 합병회사는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기구에는 총사장 1명을 두고 을(또는 갑)이 파견한다. 또한 부총사장 1명을 두고 갑(또는 을)이 파견한다. 총사장, 부총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 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기타 고급관리직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0조 총사장은 이사회 각 사항의 결의를 집행하고 합병회사의 일상경영관리업무를 조직분담한다. 부총사장은 총사장을 보좌한다. 경영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문을 설립하고 각 부문의 책임자는 총사장에 의해 지명되며 총사장, 총부사장에 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총사장과 부총사장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1조 총사장 및 부총사장은 다른 어떤 경제조직의 일상경영관리에서 최고직 또는 부최고직을 겸임할 수 없고 또한 본 합 영회사에 대한 어떤 상업적 경쟁을 갖고 있는 다른 경제조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2조 총사장에게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생긴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장 노동관리

제33조 합병회사의 종업원 모집, 해고, 임금, 사회보험, 복리후생과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자기 업 노동관리규정” 및 그 실시세칙, 관련법규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합병회사의 종업원 고용에서는 인력알선기관이 소개 한 인력중 우수한 자를 선택해서 채용한다. 시험합격자는 합병회사와 인력알선기관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노동계약 체결후 합병회사는 당지 노동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34조 갑, 을 쌍방이 파견하는 고급관리의 고용, 임금대우, 사회보험, 복리후생, 출장여비 기준 등은 이사회가 규칙을 정한다.
또한 합병회사의 외국적 고급관리자에 지급하는 보수, 급료 등은 외화로 지급한다.

제 13 장 노동조합

제35조 합병회사의 종업원은 외국투자노동규정에 기초, 직업동맹을 조직하고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 장 세무, 재무, 회계감사

제36조 합병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과 기타 공화국의 관련법규와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의 세금을 납부한다. 합병회사의 종업원은 상기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37조 합병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 의 규정에 따라 결산이윤내에서 예비기금, 기업발전기금 및 종업원복지장려기금을 공제한다. 각 연도의 공제비율은 이사회가 경영상황에 따라 토의 결정한다.

제38조 합병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모든 회계증빙, 장부, 전표, 재무제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外國投資企業會計制度” 에 기초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법으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선어로 기장한다. 인민폐로 기장한 것을 정규의 회계서류로서 작성하고 당지의 재무, 세무부문에 보고해서 보존토록 한다.

제39조 합병회사의 재무·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재정검열원이 심사, 종합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사장에게 보고한다. 갑이 다른 국가의 회계감사인을 초빙해서 연도재무에 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을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40조 합병회사는 매영업연도의 처음 3개월 이내에 총사장이 매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이익분배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에서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제41조 합병회사는 기업등록증에 기초, 공화국 외국환관리기관이 인가한 외화업무를 하는 은행에 외화 구좌를 개설한다.

제15장 이익분배

제42조 합병회사의 이익 및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증자는 하지 않는다.
- ② 손실을 보전할때까지 이익분배는 하지 않는다.
- ③ 본계약 제12조에서 정한 합병당사자의 등록자본에 차지하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④ 이익분배는 매년 1회로 하고 이사회가 그 분배액 및 분배방법을 결정한다.
- ⑤ 이익분배에 사용하는 통화는 갑에 대해서는 외화를 우선한다. 외화가 갑에 분배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합병회사가 북한원을 외화로 교환해서 분배한다. 교환할시에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제 16 장 합병기간

제43조 합병회사의 경영기간은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년으로 한다.

일방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서 일치를 본 경우, 합병기간 만료 6개월전에 원래 허가기관에 신청한 합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장 합병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44조 합병기간 만료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 을 어느 일방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는 합병회사의 해산을 결정하고 본래의 심사·인가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합병기간이 만료되어 합병기간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합병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어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③ 출자자의 어느 한편이 합병회사의 결정, 계약, 정관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자연재해, 전쟁 등의 불가항력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⑤ 합병회사가 그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동시에 장래적 발전 전망이 없는 경우
- ⑥ 기타 출자자 쌍방이 중도해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산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래의 심사, 인가기관의 허가를 얻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는 합병회사의 휴업을 포함,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5조 합병기간 만료 또는 만료전에 합병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청산한다.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갑, 을 쌍방이 등록자본에서 차지하는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잔존자산의 가격평가는 시가(또는 등가)에 기초해서 계산한다.

제46조 합병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이사회는 절차, 원칙을 정하고 청산위원회의 인선을 제출하고 합병기업주관부문의 인가 및 청산의 감독을 받는다.

청산위원회의 구성원은 합병기업의 대표,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설립심사승인기관의 대표가 포함된다. 인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원을 파견, 감독시킬 수 있다.

제 18 장 보 험

제47조 합병회사의 활동에 따른 필요한 각종 보험은 공화국내에서 보험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사에 부보한다. 단지 이러한 공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는 공화국 국외의 보험회사에 부보할 수 있다.

보험종류, 보험료, 보험기간 등은 부보하는 보험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9 장 계약 개정, 변경 및 해제

제48조 본계약서 및 기타 부속문서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갑, 을 쌍방이 협의하여 그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명란에 서명을 한 가운데 동계약을 인가한 인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유효하다.

제49조 본계약 43조, 44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시 또는 합병기간이 만료되고 동시 그 연장수속을 하지 않을시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0 장 위약 책임

제50조 갑, 을 어느 일방이 계약, 정관에 규정한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정관에 크게 반하였기 때문에 합병회사가 경영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에 규정된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그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일방은 위약한 측에 경제적 손실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계약 규정에 따라 원래의 인가기관에 대해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갑, 을 쌍방이 계속한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위약한 측은 합병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1조 합병파트너 어느 일방이 본계약서 제5장에 규정하는 대로 출자액 불입을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기일을 넘어서 제 1개월부터 기산하여 1개월 초과때마다 위약한 일방은 출자해야 하는 금액의 〇〇%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해서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의 〇〇%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계약을 준수한 일방은 본계약서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위약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합병파트너 어느 일방의 과실에 따라 본계약 및 부속문서의 이행을 할 수 없든가 또는 이행이 완결되지 않을 시에는 과실한 일방이 위약의 책임을 진다. 만약 쌍방의 과실이 있을시에는 실제 상황에 기초 쌍방이 각기 위약의 책임을 진다.

제 21 장 불가항력

제53조 갑, 을 어느 일방 또는 합영회사가 지진, 태풍, 화재, 수해,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 내란 및 기타 당사자에 의해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동시에 발생 및 그 결과를 예방할 수 없고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규정된 조건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상기의 불가항력에 접한 당사자는 바로 다른 당사자에 대해 불가항력의 상황을 통지하고 동시에 15일 이내에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 및 계약 이행불능,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연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기술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가항력이 이행책임을 일부 면제하든가, 아니하든가 또는 본계약의 이행을 연기하든가, 아니하든가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 22 장 준 거 법

제54조 본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이행 및 쟁의의 해결은 모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법규의 관할을 받는다.

제 23 장 분쟁의 해결

제55조 출자자 쌍방이 합영회사에 관한 결정, 계약서, 정관 등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상사중재원에 따라 행해진다.

제 24 장 부 칙

제56조 본 계약은 합영회사의 정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과 합영회사정관의 규정 및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본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본계약의 규정에 기초 아래와 같은 부속협약서 등을 체결한다. 이것은 본계약의 불가분한 구성성분으로 본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주) 부속협약서 등을 체결한 경우는 그 리스트를 기입한다.

제58조 본계약은 각기 수권받은 대표자 일방의 교체에 의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제59조 본 계약은 200○년 ○○월 ○○일 ○○시에서 조인하고 ○○어로 각 ○○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통을 보유한다.

제60조 본 계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무역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 승인일을 발효일로 한다.

갑 대한민국 ○○주식회사

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사